안전관리계획 2022



서강대학교 | 안전관리센터



목 차

. 안전관리계획 개요1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2
Ⅱ.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4
1. 재난 4
① 자연재난4
② 사회재난 6
2. 안전사고 7
① 대학 안전사고 7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9
③ 연구실사고 10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 범죄 13
① 일반범죄
② 성범죄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② 중대재해
6. 기타
① 비상사태(전시 등)20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Ⅳ.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23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4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25
[붙임2] 교내 비상대응 체계도26
[붙임2] 위험요인별 규정 및 지침 27
- 안전관리기획위원회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
-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지침
- 공사관리규정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방사선안전관리규정
- 생물안전관리규정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매뉴얼
- 보안업무규정
- 성폭력·성희롱·2차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안전관리계획 개요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안전한 캠퍼스 구축을 통한 인간 중심적 교육환경 조성

목표

안전사고 제로 대학 구현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 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2. 목적 및 방침

목적

-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개선 절차마련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방침

- 구성원 중심 안전관리 및 예방적 대학 생활안전 기반 마련
- 유형별 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추진
- 구성원 중심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난 복구
- 대·내외 협력 비상 대비 태세 확립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서강대학교			
주소	(04107) 서울/	니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전화	02-705-8114	홈페이지	www.sogang.ac.kr	
총장	심종혁	안전관리책임자	고 원 (직책:관리처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부생	대학원	현업근로자	상시근로자	합계
11,036명	1,943명	11명	969명	13,959명

□ 캠퍼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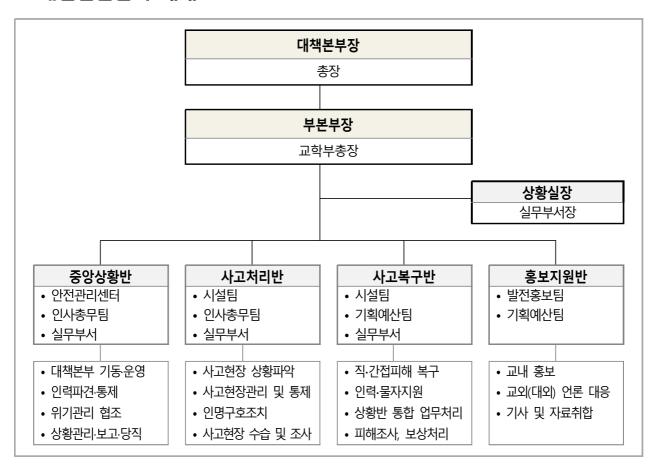


② 조직체계 현황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전관리센터	담당 부서
총괄	재정계획 수립·시행	기획예신팀	담당 부서
	홍보계획 수립·시행	발전홍보팀	담당 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시설팀	인사총무팀, 학사지원팀
1. 세 근	사회재난	시설팀	인사총무팀
	대학안전사고	학생지원팀	국제팀, 대학행정팀
2. 안전사고	연구실 사고	안전관리센터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교육시설 안전	시설팀	안전관리센터
3. 감염병	코로나 19	장애학생지원센터	인사총무팀
4. 범죄	일반범죄	인사총무팀	학생지원팀
4. 김 띄	성범죄	성평등센터	학생지원팀, 인사총무팀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센터	인사총무팀
ე. 건립세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센터	인사총무팀
6. 기타	비상사태	인사총무팀	예비군연대

□ 재난안전관리 체계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П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부장	하덕남	02-705-8024	ᄌᆌᆸᅬ
팀원	시설팀	차장	조진동	02-705-8152	주관부서
팀장	인사총무팀	부장	김동진	02-705-8779	· 협조부서
팀원	인사총무팀	과장	박구상	02-705-8980	업고구시
 팀장	학사지원팀	수석부장	이관택	02-705-8984	협조부서
팀원	학사지원팀	차장	육근식	02-705-8126	

□ 목적

대풍, 호우, 폭설로 인해 대규모 재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시설팀 및 협조 부서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 구비
 -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구성원 안전의식 고취
 -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기반으로 주관부서 및 협조 부서간 대응훈련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 관리 및 보고·전파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관계기관과 합동 피해상황 조사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및 구호활동
 - 사망자 대책
- 현장복구
 - 대학 구성원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 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2 사회재난 ※ 교육시설 실행계획에 따라 세부 관리하여 주요사항만 요약 작성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부장	하덕남	02-705-8024	ᄌᆌᆸᅬ
팀원	시설팀	직원	김현식	02-705-8627	수관부서
팀장	안전관리센터	부장	하덕남	02-705-8024	협조부서
 팀원	안전 관리센터	직원	고선경	02-705-8999	법조구시

□ 목적

화재, 건물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시설팀 및 협조부서의 대응체계 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예방·대응 ·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 실시
-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미세먼지)

-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 강화
-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2. 안전사고

Ⅱ 대학 안전사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사총무팀	부장	김동진	02-705-8779	주관부서	
팀원	인사총무팀	과장	박구상	02-705-8980	<u> </u>	
팀장	학생지원팀	차장	안 석	02-705-8982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직원	성인혜	02-3274-4896	합고구시	
팀장	현장실습지원센터	교수	이강오	02-705-8768		
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장	김용석	02-705-8972	협조부서	
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직원	한유정	02-705-8729		
팀장	국제팀	차장	이아영	02-705-8974	협조부서	
팀원	국제팀	과장	정동균	02-705-8311	日工十八	

□ 목적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 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현장실습 참여학생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포함한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 현장실습 참여학생 대상으로 상해보험 의무 가입



-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 운영 규정 마련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즉각적인 위험성이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기간 내 협의에 착수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에 대한 조치·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 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 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 교육시설 실행계획에 따라 세부 관리하여 주요사항만 요약 작성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팀	부장	하덕남	02-705-8024	조 키 티 시
팀원	시설팀	차장	조진동	02-705-8152	주관부서
 팀장	안전관리센터	부장	하덕남	02-705-8024	청도보시
 팀원	안전관리센터	직원	김현식	02-705-8627	협조부서

□ 목적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 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③ 연구실사고 ※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계획에 따라 세부 관리하여 주요사항만 요약 작성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센터	부장	하덕남	02-705-8024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센터	직원	고선경	02-705-8999	T선무시
 팀장	시설팀	부장	하덕남	02-705-8024	허ㅈㅂ시
 팀원	시설팀	차장	김재명	02-705-8888	협조부서
팀장	자연과학대학	차장	박민성	02-705-8426	협조부서
 팀장	공과대학	차장	구자일	02-705-8781] 입고구시

□ 목적

연구(실험)실의 안전 환경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안전 관련 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3. 감염병 확산

Ⅱ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장애학생 지원센터	센터장	유한덕	02-705-7800	조 키 티 시
팀원	장애학생 지원센터	직원	김정희	02-705-8209	주관부서
 팀장	인사총무팀	부장	김동진	02-705-8779	청도보시
 팀원	인사총무팀	과장	박구상	02-705-8980	협조부서

□ 목적

전파와 확산이 빠른 감염병의 원인, 증상, 진단검사, 치료법, 예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질병 예방 효과의 기대 및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 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개인위생수칙을 구성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4. 범죄

일반범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고	연락처	성 명	직급	담당 부서	구 분
│ │ 주관부서	02-705-8779	김동진	부장	인사총무팀	팀장
│ 구선구시 │	02-705-8980	박구상	과장	인사총무팀	팀원
협조부서	02-705-8982	안 석	차장	학생지원팀	팀장
_ 입고구시 	02-3274-4896	성인혜	직원	학생지원팀	팀원

□ 목적

교내 보안시스템을 사전 점검하여 도난 및 파손으로부터 구성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시 체계적이며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확산을 방지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 기법 적용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사고 조사
 - 사고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② 성범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성평등센터	센터장	김영주	02-705-8074		
 팀원	성평등센터	상담교수	김영희	02-705-8075	주관부서	
팀원	성평등센터	상담교수	이정민	02-705-8070		
팀장	인사총무팀	부장	김동진	02-705-8779	청天보시	
팀원	인사총무팀	과장	박구상	02-705-8980	협조부서	
팀장	학생지원팀	차장	안 석	02-705-8982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직원	성인혜	02-3274-4896] 됩고구시 	

□ 목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규정 개정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 변화에 따른 '서강대학교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리플릿 제작
- 예방 교육
 - 교원·직원·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수시 실시
 - 취약 그룹인 학생 대상 소그룹별 토론식 교육을 통해 학생참여를 제고하여 성희 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실천력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 자료 및 홍보 자료 제작 및 게시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위원회 운영
 - 사고 발생 대응처리를 위한 위원장(교학부총장) 주재의 성폭력 대책위원회 수시 운영
 -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및 2차 피해 방지를 전반을 위한 성평등센터 운영위원 회 매학기 운영



- 상담 및 대응 강화
 - 교원·직원·학생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사고 발생 인지시 이첩 받아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학생자치기구(단과대학·동아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학생자치기구 지도 및 문제해결 관리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산업재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센터	부장	하덕남	02-705-8024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센터	직원	고선경	02-705-8999	TUTN
팀장	시설팀	부장	하덕남	02-705-8024	협조부서
팀원	시설팀	차장	조진동	02-705-8152	[집꼬구시
 팀장	인사총무팀	부장	김동진	02-705-8779	청조보시
 팀 원	인사총무팀	과장	박구상	02-705-8980	· 협조부서

□ 목적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 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 유해·위험 방지 활동(위험성평가)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② 중대재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센터	부장	하덕남	02-705-8024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센터	직원	김현식	02-705-8627	구선구시
 팀장	시설팀	부장	하덕남	02-705-8024	청조보시
팀원	시설팀	차장	조진동	02-705-8152	협조부서
 팀장	인사총무팀	부장	김동진	02-705-8779	청조보시
 팀 원	인사총무팀	과장	박구상	02-705-8980	현조부서

□ 목적

업무 중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직종별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6. 기타

1 비상사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사총무팀	부장	김동진	02-705-8779	
팀원	인사총무팀	과장	박구상	02-705-8980	조키보다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구남규	02-705-8137	주관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김민성	02-705-8138	

□ 목적

전시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구성원이 조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전시 기능의 수행절차 및 단계별 행동요령을 규정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대비 계획 작성
 -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 실시 자체계획 작성 유지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 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 비상시 민방위대원 개인 임무 숙지
 - 전시 비상대비 대응 매뉴얼 숙지
 - 민방위 장비/물자 점검 유지관리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 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1~4년차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연 1회)
 -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실시(연 1회)
 -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 실시(연 3회)



\coprod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교직원 단체 상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_
 재산종합보험	_	KB손해보험
 연구실안전공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대학교 현장실습 안전공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

2. 대학보험(공제) 가입 세부현황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험(공제)명	가입기간	총보험료	가입인원 수	보상한도	비고
플러스 교육기관보험	2021.05.04	20,474,300	10,508명	대인: 1인당/1억원 1사고당/10억원 대물: 1사고당/5천만원 치료비: 1인당/3백만원 1사고당/3백만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1인당 3천만원)	학생지원팀

② 교직원 단체 상해보험

보험(공제)명	가입기간	총보험료	가입인원 수	보상한도	비고
단체 상해보험	2021.08.31. 2023.08.30.	192,101,858원	606명	질병사망 : 1,000만원 상해사망 : 5,000만원 교통상해사망 : 6,000만원 상해후유장해 : 5,000만원 :	인사총무팀

③ 재산종합보험

보험(공제)명	가입기간	총보험료	가입건물 수	보상한도	비고
재산종합보험 (Package I)	2021.07.14. 2022.07.13.	38,328,857원	35개동	401,219,514,228원	관재 팀



④ 연구실안전공제(보험)

보험(공제)명	가입기간	총보험료	가입인원 수	보상한도	비고
연구실 안전공제	2021-11-01 2022-02-28	22,354,020원	3,445명	유족급여 : 200,000,000원 장해급여 : 200,000,000원 요양급여 : 100,000,000원 장의비 : 10,000,000원 입원급여 : 50,000원	안전관리센터

5 대학교 현장실습 안전공제(보험)

보험(공제)명	가입기간	총보험료	가입인원 수	보상한도	비고
대학교 현장실습 안전공제	2021-12-22 2022-02-28	169,600원	33명 * 학기마다 참여학생 대상	상해사망: 200,000,000원 상해후유장해: 200,000,000원 상해의료비: 10,000,000원 배상책임: 10,000,000원 장례비용: 3,000,000원	현장실습 지원센터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2022년 4월	교직원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2. 연구실 안전교육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교육	2022년 4월	학생	■ 연구실 안전교육
 정기교육	2022년 5월	학생	■ 연구실 안전교육

3. 성범죄 예방교육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2022년 5월	교직원	■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

4. 국제학생 대상 범죄예방 교육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범죄예방 교육	2022년 2월, 8월	국제 학생	■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신·편입 국제학생 대상 범죄예방 교육 진행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재난 및 안전사고(산업재해, 중대재해 포함)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고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재난안전대책본부	02-726-2310		
	02-3153-8114		
마포구청	02-3153-8100	당직상황실	
	02-3153-9466	재난안전팀	
마포소방서	02-701-3495		
히고저기이저고시	1588-7500		
한국전기안전공사	02-6488-6200	서울지역본부(신수동)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연국가로한선증사	02-393-0795	서울서부지사(서대문)	
	061-345-3114		
한국전력공사	061-345-3203	당직상황실	
	123	마포용산지사	

□ 감염병 확산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고
질병관리청	1339	
마포구 보건소	02-3153-9020	

□ 범죄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고
마포경찰서	182	
마포경찰서 서강지구대	02-334-4975	

□ 비상사태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고
국방부	1577-9090	
서울종합방재센터	02-726-2206	민방위 재난통제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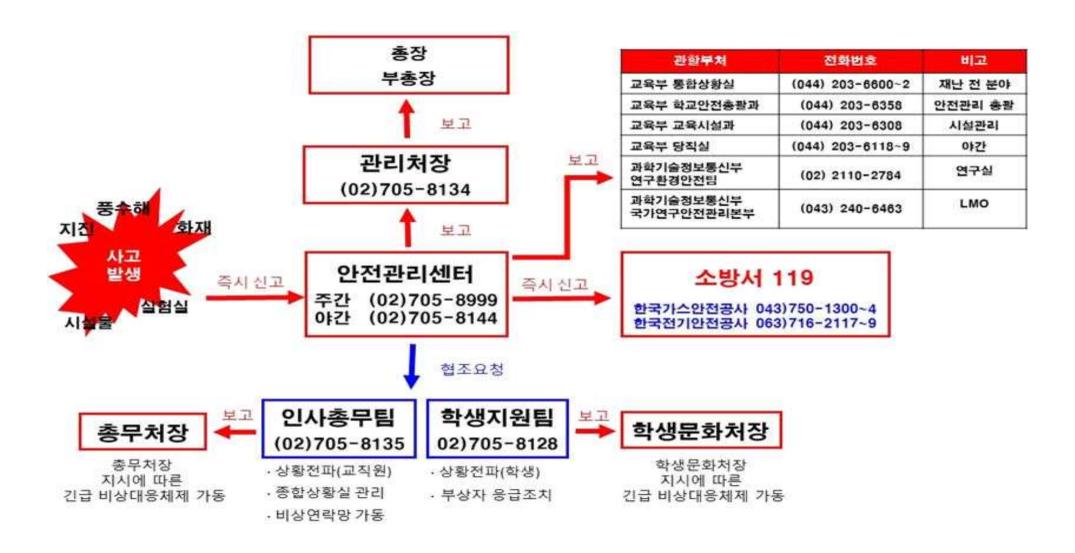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지연 등 개난 등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팀 원 팀 원 팀 원 팀 원 팀 원 팀 원	시설팀 시설팀 인사총무팀 인사총무팀 시설팀 시설팀 안전관리센터	부장 차장 부장 차장 부장 직원	하덕남 조진동 김동진 박구상 하덕남	02-705-8024 02-705-8152 02-705-8779 02-705-8980	주관부서 - 협조부서
지난 투 1. 투 재난 부 사회 투 재난 투	팀장 팀원 팀장 팀원 팀원	인사총무팀 인사총무팀 시설팀 시설팀	부장 차장 부장	김동진 박구상	02-705-8779	
지난 투 1. 투 재난 두 사회 투 재난 투	팀원 팀장 팀원 팀장	인사총무팀 시설팀 시설팀	차장 부장	박구상		협조부서
재난 <u>투</u> 사회 <u>투</u> 재난 <u>투</u>	팀장 팀원 팀장 팀원	시설팀 시설팀	부장		02-705-8980	ᅴ 엽소무서
재난 <u>투</u> 사회 투 재난 <u>투</u>	팀원 팀장 팀원	시설팀		하더나		- 업소무서
재난 팀	팀장 팀원		직원	$\neg \neg \neg$	02-705-8024	7 J H //
재난 팀	팀원	안전관리센터		김현식	02-705-8627	│ 주관부서
			센터장	하덕남	02-705-8024	청조비시
E E] 자	안전관리센터	직원	고선경	02-705-8999	─ 협조부서 -
	- 0	인사총무팀	부장	김동진	02-705-8779	조
Ę	팀원	인사총무팀	과장	박구상	02-705-8980	─ 주관부서
대학	팀장	학생지원팀	차장	안 석	02-705-8982	
안전 <u>-</u>	팀원	학생지원팀	직원	성인혜	02-3274-4896	
F E	팀장	국제팀	차장	이아영	02-705-8974	─ 협조부서
Ę	팀원	국제팀	과장	정동균	02-705-8311	
2. 안전 교육	팀장	시설팀	부장	하덕남	02-705-8024	조 및 보 시
안전 교육 트 사고 시설 트	팀원	시설팀	차장	조진동	02-705-8152	─ 주관부서
	팀장	안전관리센터	센터장	하덕남	02-705-8024	H II
사고 투	팀원	안전관리센터	직원	김현식	02-705-8627	│ 협조부서
Ę	팀장	안전관리센터	센터장	하덕남	02-705-8024	주관부서
연구실 투	팀원	안전관리센터	직원	고선경	02-705-8999	
	팀장	자연과학대학	차장	박민성	02-705-8426	취고보시
Ę	팀장	공과대학	차장	구자일	02-705-8781	┪조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유한덕	02-705-7800	조
3. 코로나 팀	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김정희	02-705-8209	─ 주관부서
감염병 -19 <u>투</u> 확산	팀장	인사총무팀	부장	김동진	02-705-8779	청조보시
	팀원	인사총무팀	과장	박구상	02-705-8980	─ 협조부서
일반 팀	- 팀장	인사총무팀	부장	김동진	02-705-8779	조 게 ㅂ 시
4. 범죄 팀	팀원	인사총무팀	과장	박구상	02-705-8980	─ 주관부서
범죄 서버지 팀	팀장	성평등센터	센터장	김영주	02-705-8074	
 성범죄 [팀원	성평등센터	상담교수	김영희	02-705-8075	─ 주관부서
E	팀장	안전관리센터	센터장	하덕남	02-705-8024	주관부서
5. 산업 투	팀원	안전관리센터	직원	고선경	02-705-8999	_ 구선구시
5. 산업 재해 <u>투</u>	팀장	시설팀	부장	하덕남	02-705-8024	청조보시
	팀원	시설팀	차장	조진동	02-705-8152	─ 협조부서
	팀장	안전관리센터	센터장	하덕남	02-705-8024	 - 주관부서
중대 중대 팀	팀원	안전관리센터	직원	김현식	02-705-8627	구ᅺᅮᄭ
재해 재해 팀	팀장	시설팀	부장	하덕남	02-705-8024	청조보시
Ę	팀원	시설팀	차장	조진동	02-705-8152	─ 협조부서
- E	팀장	인사총무팀	부장	김동진	02-705-8779	~ 기보시
6. 비상 팀	팀원	인사총무팀	과장	박구상	02-705-8980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구남규	02-705-8137	─ 주관부서
 _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김민성	02-705-8138	



붙임2

교내 비상대응 체계도





붙임3

위험요인별 규정 및 지침

- 안전관리기획위원회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
-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지침
- 공사관리규정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방사선안전관리규정
- 생물안전관리규정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매뉴얼
- 보안업무 규정
- 성폭력·성희롱·2차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안전관리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2022.2.14.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안전관리 위반 구성원 및 시설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4.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 5. 기타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 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법인 상임이사, 학생문화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외교류처장, 연구처장, 안전관리센터 팀장(이상 당연직)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할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관리처장, 간사는 안전관리센터 직원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제 4 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 5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관리처 안전관리센터에서 담당한다.
-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비대면회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비대면(서면결의 포함)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전자결재 포함) 하여야 한다.
- 제9조 (관계부서 등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 부서 및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22. 1.11.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강대학교 캠퍼스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강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캠퍼스 내 도로에 적용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에서 정의하는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 수단을 말한다.
 - ②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③ "관리부서"란 관리처 안전관리센터를 말한다.
- 제4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대학의 관리부서는 교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 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 (대학의 의무) ① 대학의 관리부서는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대학의 관리부서는 대학 캠퍼스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6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의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이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포함)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운행

- **제8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 야 한다.
 -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

는 아니 된다.

제9조 (속도 제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한다.

- 제10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등(이하 "차량 등" 이라고 한다) 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보행자의 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충전 및 주차

제12조 (충전) 화재 및 전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내에서 충전할 수 없다.

- **제13조 (주차 장소의 제공)** ① 대학의 관리부서는 학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 거치 장소를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14조 (주차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교차로 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된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 9. 도로, 보도, 테라스,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 10.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 11. 대학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1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대학의 관리부서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대학의 관리부서는 제1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대학이 이동할 수 있다.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 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학의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주차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신속히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대학의 관리부서는 보관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반환 요구 시 이동장치의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부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경우 개인용 이동장치의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대학의 관리부서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용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 제16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대학의 관리부서는 제1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개인용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용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대학의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 교육

- **제17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8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7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 (난폭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안전운전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 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 운행할 것
 - 2. 캠퍼스 내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 3.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 4.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
 - 5.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6.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8.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말 것
- 9.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말 것
- 10.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고,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 착용을 고려할 것
- 11.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
- 12.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말 것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할 것)
- 13. 그 밖에 대학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 제22조(안전교육)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학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그 밖에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안전사고

- 제23조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는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는 사고 발생 장소 및 사상자 수, 부 상 정도, 재산피해 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학의 관리부서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4조 (안전사고의 조사) ① 대학의 관리부서는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신고한다.
 -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1. 사고 발생 일시
 - 2. 사고 발생 장소
 - 3. 피해 상황(사망자 수, 부상자 수, 재산피해 규모)
 - 4. 사고 사유
 - 5. 사고 발생 경위
 - 6.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 7. 사고 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 제25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① 대학의 관리부서는 대학 내 도로의 지상 (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대학의 관리부서는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 6 장 기 타

- 제26조 (제재조치 등) 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캠퍼스 내 운행을 금지하며, 대학의 재산상 손해 발생 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또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7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안전 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8조(관리부서) 규정 제정 및 안전시설 관리, 지도단속 등의 관리부서는 관리처 안전관리센터로 한다. 단, 규정 개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9조(협조요청)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의 성격에 따라 관련부서(교무처, 학생문화처, 총무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0조(세부운영규정 제정) 대학의 관리부서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여 관련 기관 및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배포·공지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지침

제정 2020.4.13.

-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서강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의 학생단체 운영 및 활동 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학생 집단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대책 및 학생의 안전과 대학 내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본교 대학본부 및 각 학부(전공)단위, 총 학생회 및 총학생회 산하에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 (담당부서)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는 본교 학생문화처 학생지원팀과 각 학부(전공) 단위 행정팀이 담당한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학생집단활동"이라 함은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축제, 체육대회,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워크숍, 기타 교내·외 다양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②"인권침해 행위"라 함은 학생들의 집단 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이다.
 - 1.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뻗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행위
 - 2.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폭언(욕설, 위협 등), 강요, 인신공격, 명예훼손,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 3. 성적 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제5조 (안전관리 우선)** 대학본부 및 각 학부(전공)에서는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적으로 배려,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 (안전관리 책임자 및 보고)** ① 학생 집단 활동 시 사고 예방과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 총괄책임자는 학생문화처장으로 한다.
 - ② 사고예방을 위하여 집단 활동을 주관하는 학생대표와 지도교수를 현장책임자로 한다.
 - ③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침해 학생의 신고·상담·처리는 다음의 부서에서 한다.
 - 1. 제4조(용어의 정의) 제2항 제1호와 제3호 : 인권센터
 - 2. 제4조(용어의 정의) 제2항 제2호 : 학생문화처
 - ④ 행사 신청서 제출은 본교 학생단체 운영 및 활동 규정 제11조(행사신청서 제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생문화처또는 해당학부 행정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현장책임자는 본 규정 제7조의 각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⑥ 현장책임자는 집단 활동 중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책임자는 지체 없이 학생문화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안전관리 범위 및 내용)** ① 교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 2. 행사 참석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3. 행사에 동원되는 무대,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 4.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교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 2. 행사 참석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3. 행사에 동원되는 무대,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 4.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 가.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 확인(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 나. 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확인
 - 다. 숙박시설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5.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가,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다.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행사당일 배차된 차량의 차량번호 일치여부 확인
 - 라. 버스 차종 및 연식, 승차정원 확인
 - 마. 배차 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확인
 - 바. 배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 감지 측정
 - 6. 행사(계약) 전 사전 답사
 - 가. 보험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확인
 - 나.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다.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7. 대학 측 주관 행사의 경우 교직원이 동행
 - 8.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 (징계) 본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고 발생 시 행위(가해)자는 학칙 제60조(징계)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징계의 대상) 규정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9조 (준용)**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 얼"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20, 4, 13〉

이 제정 지침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행사 신청서

결 지도교수(학과장)							결	담당자		팀장	부서장	
재								재				
	행 사 명					주관 단체	명					
	행사일시					행사 장결						
	목 적					0 1 0		1				
	, ,	학 생	명	외	 부인	명	지.	도(인·	솔) 성명			(인)
	참석인원	교수						• 직				
		(교직원)	명 계		명	※ 인솔 교·직원이 없을 경		경우	 우 행사를 숭인할 수 없습니다.			
		행사 관련	안전점검						이행(_ 10\)
		371 111		책임		가입 여부			, H.) 1	미가입()
		보험가입 여부	가입()					권침해	이행() 불	이행()
			※교내 보	험으로		^{처리 가능} ト체안전점검	_]도여부 배상책임5	1 처		
		숙박시설확인				r세한센점점 ·인서 확인			1배경색급5 가입 확인	스님	안전매-	뉴얼확인
		※확인된 사항여	에 ○하세요	3	9	교계 역 교			/1日 덕 년			
안?	전 확인 사항	교통수단확인(히	1 r L z) z). (대중	교통	·, 전시	테버스, 선택	박, 항	공, 기타	
		₩ 선박/항공 이		, ,	※선박	计항공 이용	시					
		(시간) 필수 기			출발	:			(편명 :)	
				도착 :			(편명 :)		
		전세 버스 안전	. –		차	당보험 확인		정기	정기검사서 확인		안전매뉴얼확인	
		※확인된 사항이 응급사항 대처		<u>.</u>	해고	나 이그 벼의	면 /	여라	7.J ·		1	
			확인					· →총장				
		(0)										
	서 약 서	생을 대표하여					활등	를 및	운영 규정	, 본	지침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어] 허가를 .	요청학	합니다.			₹ 1 ·	리/H) 레드	⊸ 1		٥١
		1 1 - 11 - 31	1) 00) =1	(-1 -	ا ما ما	시작되다 ㅠ	1 -		과(부) 대표			인
		1. 신고서는 행에 학생문화처여					; n/	외단>	제와의 연합	불앵사	인 경우에	는 /일 선)
ر ال	청서 작성 시	2. 현장책임자는	– .				コに	ld스	. 으여 아코	l 하나	a 레느어 I	으 스기치
7U.	용시 작성 시 유의사항	시고, 학생들										현 취기이
	11-11-10	3. 기안서 작성										수(학과장)
		승인 - 학생문회		_								
		전공명 :	<u></u> 학번			<u>- · · · · -</u> (학년)			성명 :		(인)	
	신 청 인	연락처 :				, , , –			직위 :			
	신 청 일								20 k	<u> </u>	월 일	
		<u> </u>	71) 0	기자 비	스지	및 이용 동	이서					
해시	<i>-(</i> 진회) 시고 과	·련하여 아래와 7	-	-					위하여 [7	비이것	日まり	제15조에
		알려드리며 다음						1 * 1	11-1 1 17	11 12 0		11000 1
]·이용 목적 : 현										
		H인정보 항목 : 스					서 기	기재시	-항			
		R, 이용기간 : 수	.,,		, –			. '				
	신청자는 개인정	d보 수집을 거부 [*]	할 수 있는	- 권리	리가 있	지만, 거부	시	신청시	나항이 취소	.될 수	의습니다	
] 동의함.			□ 동.	의하	지 않	유			
							작성	자 :			(서명	병 또는 인)

▶제출 서류 : ① 행사신청서, ② 행사계획서(자율 서식), ③ 예산 ④ 참석자 명단(붙임 서식), ⑤ 교외 단체행사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표(붙임 서식), ⑥ 기타(숙박시설-소방안전점검필증,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지자체안전점검필증교통안전-차량보험가입증권) 각 1부.

참석자 명단

▶불참시: ×표

연번	학번	성명	참석 여부	연번	학번	성명	참석 여부
1				31			
2				32			
3				33			
4				34			
5				35			
6				36			
7				37			
8				38			
9				39			
10				40			
11				41			
12				42			
13				43			
14				44			
15				45			
16				46			
17				47			
18				48			
19				49			
20				50			
21				51			
22				52			
23				53			
24				54			
25				55			
26				56			
27				57			
28				58			
29				59			
30				60			

위와 같이 참석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참석:____명, 불참:____명)

20 년 월 일

성명: (인)

[붙임 서식]

교외 단체행사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표

• 숙소명 :	
• 연락처 :	
•주 소: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서류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였습니까?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차량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상태	개문 가능한 창문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점검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차량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는 확인하였습니까?	
및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업체에 제출요구의 운전자 이상 유무 확인 및 배치된 운전자와 동일여부확인)	
운전자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습니까? (최소 1주일 전 요청)	
군신사		- 해당 학교가 속한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 측정 실시 요청	
	0 21 21	- 2일, 3일째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숙소 출발 전 음주측정 요청	
	운전자	운전 중 주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 하였습니까?	
		- 대열운행 금지(버스 간 간격 유지, 고속도로 경우 1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 과속, 신호위반,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 내리막길 안전 제동	
		- 운행 일정 협의 및 무리한 운행 일정 금지	
-1 m	안전교육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학생	비상대처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까?	
구급약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였습니까?	
一十日 年	ㅋ풉 비시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였습니까?	
서 키 만	비상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연락망	연락망	비상시 본교, 보호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하도록 준비하였습니까?	

□ 숙박 점검에 관한 사항

	점검 내용	확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답사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또는	2층 이상의 경우 소방시설(완강기, 소화기, 소화전)이 정상 작동합니까?	
사전 점검)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또는 개별법령 안전 점검 결과)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착 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십시오.	
그의 주	필요한 구급약품을 구비하십시오.	

□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점검 내용	확인
답사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는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전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점검)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도착 후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십시오.	
고식 구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십시오.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소속 : 성명 성명 (서명)

(서명)

사고발생 보고서

학교명/주소	학년	학과	성명	성별	연령

총장 :	J	보고자:			
1. 사안 개요 가. 사건 일시 나. 장소 : 다. 사건 내용		!칙)			
2. 사안 경과(일자별	, 시간대별)			
0					
3. 참고 사항	(정서행동	등발달사항, 성적, 성격	, 가족관계, 교우된	관계, 주변횐	·경, 기타)
4. 학교 조치	사항				

공사관리 규정

제정 1987.9.1

개정 1994.9.1

개정 2012.3.20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강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공사의 합리적 인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급공사의 전반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용어의 정의) 공사관리라 함은 계약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사항 등의 공사관계서 류를 근거로 공사에 대한 기록, 보고, 서류처리 외에 각종 타협, 확인, 지시, 조정 등 기술적 관리를 하는 행정업무이다.
- 제 3조(감독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본교는 당해 공사의 감독관을 임명하며 이는 공사 담당부서장이 수행한다. 또한 감독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감독관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감독관의 책무) ① 감독관은 당해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관리에 대한 제 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② 감독관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해 공사의 계약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사항, 공법 및 관련 기술 등 공사 전체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③ 감독관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도서의 규정과 일치하는지 검사를 실시하며 불합격 자재에 대한 현장 반출을 명할 수 있다.
 - ④ 감독관은 부분 성과품에 대해 도서의 규정과 일치하는지 검사를 실시하며 불합 격품에 대해 철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 ⑤ 감독관은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성고 검사를 실시하여 기성고를 사정하고 준공시 성과품이 도서와 일치하는지 검사를 수행한다.
 - ⑥ 감독관은 도서에 의한 시공일지라도 본교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질의 저하가 우려될 때 설계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①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때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제 5 조 (감독관의 보고사항) 당행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 해야 한다.
 - 1. 착공신고
 - 2. 기성검사결과
 - 3. 준공검사결과
 - 4. 설계변경사항
 -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6.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성과품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 제 6조 (서류의 비치) 감독관은 다음 서류 및 장부들을 비치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 본교의 문서규정에 적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1. 도면
 - 2. 시방서
 - 3. 현장설명서
 - 4. 착공계
 - 5. 계약내역서
 - 6. 공정표
 - 7. 현장대리인계
 - 8. 공사일보
 - 9. 기성검사서
 - 10. 기성내역서
 - 11. 준공검사원
 - 12. 준공계
 - 13. 검수소견서
 - 14. 설계변경서
 - 15. 기타 공사관계서류
- 제 7 조 (착공) 시공자는 계약후 5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감독관에게 착공계, 계약 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 조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공사의 노무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및 지시를 받는다.
 - 1.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기술사 또는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12.3.20>
 - 2.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기사 이상 <개정 2012.3.20>
 - 3.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산업 기사 이상 <개정 2012.3.20>
- 제 9 조 (기성고 검사)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서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시 감독관은 공사일보에 의거하여 기성검사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상급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제10조 (준공 및 검수) ①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5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 원을 제출받아 검수소관부서와 검수유관부서에 통보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수소견서에 기재하여 원본을 검수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사본을 검수유관부서 에 통보한다.
 - 1. 준공검사원

- 2. 준공도면
- 3. 공사관련사진
- 4. 기타 공사관련서류
- ② 시공자는 검수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검수의 방법) 검수는 도면, 계약내역서, 시방서, 현장설명 사항 등을 근거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1. 성과품이 도면과 일치 여부
 - 2. 사용자재가 내역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 3. 공법 및 품질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 4. 준공 연기신청이 있었을 경우 그 타당성 여부
 - 5. 성과품이 본교의 공사목적과 일치 여부
- 제12조 (검수자의 책무) ① 검수자는 검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검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작성하여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검수자는 감독관에게 제출받은 공사관계서류를 토대로 검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③ 검수자는 감독관, 검수유관부서, 시공자의 입회하에 제11조에 따라 공정하게 검수를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 및 공기에 대한 적정 판정을 내린다.
 - ④ 검수자는 성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⑤ 검수후 판정에 대한 책임은 감독관 및 시공자가 연대적으로 진다.
- 제13조 (법정경비의 정산) 감독관은 공사완료 후 시공자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법정경비의 실제 지출 내역을 기재한 정산내역서 및 관련 증 빙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별도의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3.20]

부 칙

-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주관부서장과 기획실장의 협의하에 총 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12년 3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정 2006. 10. 25.

개정 2013. 03. 01.

개정 2013. 09. 01.

개정 2017. 05. 18.

개정 2021. 04. 07.

개정 2022. 01. 25.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서강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부설 연구기관 내 연구개발활동 수행을 위해설치한 연구실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교수(이하 "연구실책임자"라 한다.),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하 "연구활동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05.18.> <개정 2022.01.25.>

제 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실" 이라 함은 본교의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설치한 연구실, 실험실, 실습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 2. "연구주체의 장" 이라 함은 대학의 대표자(총장)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7.05.18.>
-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란 연구실 안전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할 수 있는 연구실안전관리 업무 담당 안전관리센터 직원을 말한다.
- <개정 2017.05.18.> <개정 2022.01.25.>
- 4. "연구실책임자" 란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지도교수를 말한다. <개정 2022.01.25.>
-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란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고,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22.01.25.>
- 6. "학과 안전관리자" 라 함은 학장 또는 학과장의 지시를 받아 단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고 학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01.25.>
- 7. "연구활동종사자" 라 함은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1.04.07.>
- 8. "안전점검" 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 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정밀안전진단" 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10. "연구실사고" 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상해)·질병·신체장애·사망 등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5.18.> 1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 2장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직무

제 4조 (조직체계 및 직무) ①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실무부서와 행정지원부서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행정지원 주무부서는 안전관리센터로 한다. <개정 2022.01.25.>

② 세부적인 조직체계는 [별표1]과 같이 운영한다.

제 5조 (업무처리 절차) 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처리 절차는 안전관리센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관련 부서 및 학과 안전관리자에게 업무협조 요청을 통해 처리한다. <개정 2022.01.25.>

②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2]와 같이 운영한다.

제 6조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는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연구활동 수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학과 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를 지휘·감독하고 연구주체 전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7조 (시설관리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는 관리처장으로 하며,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지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 8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총장이 임명하며 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7.05.18>

- 1. 연구실안전법 이행에 관한 사항
- 2. 연구실 안전관리조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07.>
- 3.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개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4.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 대관업무<개정 2021.04.07.>
- 6. 안전교육 및 훈련 업무
-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변경 선임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명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8.>

제 9조 (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2.01.25.>

-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01.25.>
- ③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25.>
- 1. 연구실의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3.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4. <삭제 2022.01.25.>
- 5. <삭제 2022.01.25.>
- 6. 연구실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22.01.25.>
- 8.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해당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개정 2022.01.25.>
- 9. <삭제 2022.01.25.>

제 10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연구실 안전수칙 준수
- 2.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표 작성
- 3. 소속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4. 소속 연구실 안전보건표지의 유지 관리
- 5. 소속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및 보고 <개정 2022.01.25.>
- 6. 소속 연구실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 활동 시작 전 안전교육 및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사항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해야 한다.

제 11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별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8.> <개정 2022.01.25.>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8.>

제 12조 (학과 안전관리자) ① <삭제 2022.01.25.>

- ② 학과 안전관리자는 학장 또는 학과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 ③ 학과 안전관리자는 학과별 연구실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1. 연구실의 시설물, 장치,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유지관리
- 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관리 및 지도
- 3. 단위 연구실 안전담당자 일상점검 여부 확인 조치
- 4.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보고
- 5. 실험폐기물 분별수집 및 폐기 의뢰
- 6. 연구실 내 시설별 안전점검 실시 관리 및 사고예방 조치
- 7. 연구실 단위의 각종 안전표식 작성 게시 관리
- 8. "연구실 단위의 비상연락망 관리" <개정 2022.01.25.>
- 9. 연구실별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파악 및 조치
- 10.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 ④ <삭제 2022.01.25.>
- ⑤ <삭제 2022.01.25.>
- ⑥ <삭제 2022.01.25.>

제 13조 (연구활동종사자)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학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4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 연구주체의 장을 비롯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연구실책임자·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학과안전관리자·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 1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 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관리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연구처장, 자연과학대학 학장, 공과대학 학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이상 당연직)로 구성하며, 간사는 안전관리센터장이 한다. <개정 2017.05.18.> <개정 2022.01.25.>
- ③ 위원회 위촉위원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선임학과 학과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1.25.>
- ④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관리처장이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1.04.07.>
- 1. 연구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07.>
- 2. 연구실 안전시설 확보 및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07.>
- 3.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 안전관리 위반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5. 사고 또는 재해 대책 및 연구실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6.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7.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안전점검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8.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본교 연구실안전관리 주요사항 논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⑦ 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5.18.>
- ⑧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 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1.04.07.>

제 16조 (학부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삭제 2022.01.25.>

- ② <삭제 2022.01.25.>
- ③ <삭제 2022.01.25.>
- ④ <삭제 2022.01.25.>
- ⑤ <삭제 2022.01.25.>
- ⑥ <삭제 2022.01.25.>

제 4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및 사고관리

제 17조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은 실시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① 일상점검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기계기구 . 전기 위험 또는 유해한 약품 및 병원체 보관 . 라벨 부착상태, 적정보호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안전점검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정기점검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8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8.>
- ① 연구실안전법 제19조의1항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7.>
- ②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6-33호 "연구실 사전유해인 자위험 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1.04.07.>

제 19조 (사고발생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등)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평 상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 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 ② 연구실 책임자는 해당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안전수칙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사고발생에 따른 비상연락 및 응급처리체계는 [별표6]과 같다. <개정 2022.01.25.>
- ④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별표7]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연구실책임자 및 학과 안전관리자는 [서식7]을 작성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5.>

제 20조 (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수립 등) ①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센터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주관하에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고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와 피해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5.>

- ②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책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사고 조치 및 전말, 그밖의 중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7.>
- ⑤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식 6]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04.07.><개정 2022.01.25.>
- ⑥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은 안전 관련 홈페이지 게시 및 업무협조 공문 등을 통해 공표해서 사고사례를 전파해아 한다. <신설 2022.01.25.>

제 5장 안전교육 . 훈련

제 21조 (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연구실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총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7.>

- ② 본교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내용은 [별표8]에 따르며, 법정 이수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5.18.>
-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에 대한 제반사항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 ④ 학과 안전관리자는 학과별 안전교육대상자 명단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 외에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삭제 2022.01.25.>

제 6장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제 22조(보험가입) ①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7.>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보험가입을 위해 해당 학과 안전관리자에게 보험가입 대상자 명단을 요청할수 있으며,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3조 (건강검진) ①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개정 2021.04.07.>

-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보험가입을 위해 해당 학과 안전관리자에게 보험가입 대상자 명단을 요청할수 있으며,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 7장 안전 관련 예산의 반영

제 24조 (안전관련 예산 확보 및 시행) ①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반영한다. <개정 2021.04.07.>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 관련 예산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사용한다.

제 8장 행정조치 및 제재조치

제 25조 (행정조치) ①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학과안전관리자는 학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 26조 (제재조치)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훈련의 이수시간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규정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실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점검표에 의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담당자가 일상점검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22.01.25.>

제 9장 안전관리 관련 기록 .보존

제 27조 (안전관리 관련 기록·보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학과 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
- 2. 연구실 안전점검표
- 3.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4. 연구실 안전교육 및 훈련 보고서
- 5. 연구실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 6. 기타 안전관련 자료

제 10장 연구실 안전수칙 및 안전표식

제 28조 (안전수칙 등 게시) ① 연구실책임자 및 학과 안전관리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구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 방지 차원에서 금지·주의·경고·비상시 조치나 안 내사항 등을 그림, 기호 등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수칙 및 안전표식을 제작 및 부착해야 한다.

- ② 학과 안전관리자는 연구실별 안전수칙, 사고시 응급조치 등 안전지침을 게시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③ 안전수칙 및 표식 설치와 관련된 기준은 [서식2], [서식3]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연구실책임자의 임의 결정 하에 제1항의 목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한다.

제 29조 (연구실 안전수칙)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실험의 원리와 목적 그리고 실험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험에 임한다.
- 3. 연구실에서는 침식을 할 수 없으며 난방용으로 전열 및 가스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 4. 실험하는 동안 항상 실험복 및 를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5.>
- 5.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HOOD를 사용한다.
- 6. 사용자는 실험 도중에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이탈할 경우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 자의 허락을 받아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 7. 실험에 필요한 기기, 시약, 위험물질 등은 사용 전후에 항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0조 (연구장치 사용취급 준수사항) 연구·실험장치의 안전한 사용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장치(고온.고압장치, 레이저, 자외선장치, 고압·독성가스, 특수 장치 등)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한다.<개정 2022.01.25.>
- 2.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장치의 조작.운영, 사용절차, 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5.>
- 3. 폭발, 스파크 등이 발생하는 위험한 연구 활동에는 반드시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연구를 해야한다. <개정 2022.01.25.>
- 4.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관련 기준 및 장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01.25.>

제 31조 (시약, 위험물관리 및 처리 등)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22.01.25.>

- 1. 물질 성상에 맞는 환경(온도, 압력, 습도)에서 완전히 밀봉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5.>
- 2. 제조사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5.>

- 3. 성상에 맞는 내화학성 재질의 용기에 파손(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1.25.>
- 4. 용기에 유해화학물질 정보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25.>
- 5.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은 상호간 반응성을 고려하여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25.>
- 6. 폐액은 반응하지 않도록 내화학성 전용용기에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 25.>

제 32조 (방사능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지침) 연구실 내 방사능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지침은 방사능 안전관리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18.)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7.)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5.)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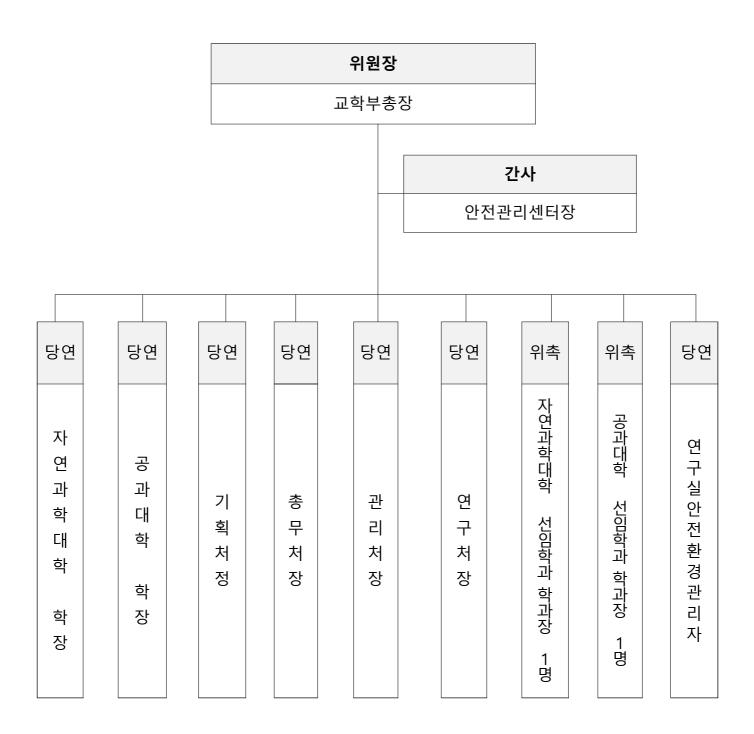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도



연구실 안전관리업무 처리절차

	총 장				
	^				
교학부총장					
^		^			
관리처장		자연과학대학 학장 공과대학 학장			
^		^			
안전관리센터장		자연과학대학 학과장 공과대학 학과장			
^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학과 안전관리자			
 학과별 연구실운영 관련 자료 요청 안전교육 및 훈련 협조 요청 기타 연구실안전 업무 협조 요청 	+	연구실안전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				
	연구실책임자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 [별표 4] <삭제 2022.01.25.>
- [별표 5] <삭제 2022.01.25.>
- [별표 6] <개정 2022.01.25.>

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연락 및 응급처리체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705-8999

캡스상황실 ☎02-3273-9057

시설팀 ☎705-8151

사고발생 시 조치내용

사고보고 사고처리 및 대책 수립 사고원인분석 및 조사 현장보존 및 기록

사고발견 시 행동요령

신고 상황전파 및 응급처치 대피유도 사고현장 보존 연구실책임자(교수) 및 학과 안전관리자 최초 발견자 연구실 사고 발생

관련 부서장

안전관리센터장 ☎705-8024

인사총무팀장 ☎705-8779

관계 기관

소방서 : 119

관할소방서: 718-2119 연세병원: 3327-7582 세브란스병원: 2228-8888 마포경찰서: 393-0063

연구실사고 처리흐름도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1. 신규 교육	근로자	가.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나.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자	다. 교원(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 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 자		
2. 정기 교육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근무하는 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실에 근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 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따른 저위험 연구 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3. 특별교육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2시간 이상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4. 훈련			연 1회 이상	

비고

- 1. 제1호에서 "시행령 제11조2항" 이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해당되는 연구실을 말한다. (=제2호의 가)
- 2. 제2호에서 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 ※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제2호 나에 연구활동종사자는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면 제받을 수 있다.
- 3. 제2호의 정기교육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연구실 안전관리표지

안전관리책임자 및 비상연락망					
연구실명					
연구실책임자		연락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학과 안전관리자		연락처			
사고시 비상 연락처					
	사고시 비상 연	락처			
사 례	사고시 비상 연 	락처	전화번호		
사 례		락처	전화번호 119		
사 례 화재, 전기, 가스, 폭발 물리·화학·생물학적, 방사능 유출 사고시	담당기관	락처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구분	안전관리 수칙
공	 ○ 연구실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모든 실험은 적정한 보호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실험 전 주기적으로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험을 수행 한다. ○ 연구실 출입문에는 비상시 비상연락망 등의 기록을 반드시 표시한다. ○ 연구실 책임자는 실험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보존, 흡연, 화장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실험과 무관한 물품의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출입구 및 배전반 앞에 장애물 설치 및 적재를 금지한다. ○ 연구실 통로는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물을 사용하는 실험기자재는 주변의 콘센트를 방수형으로 한다. ○ 환기팬에 분진을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 전선, 콘센트, 차단기는 사용 전기제품 용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고압가스 방출에 따른 상해 위험이 있으므로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를 한다. ○ 연구실 퇴실 전후에 연구실의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확인한다.
기계	 ○ 기계장치는 실험 전 사용 지침서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운전하여야 한다. ○ 각종 위험기계·기구는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공작기계, 측정기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의 공구를 사용한다. ○ 밀링, 선반, 드릴 등을 이용한 금속가공 시 칩비산 방지망을 설치하고 띠톱, 둥근톱 기계에는 날 접촉예방장치 등을 설치한다. ○ 벨트 회전부위에 옷, 손가락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덮개를 부착한다. ○ 기계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는 운전 기계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 기계를 점검, 수리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산소-아세틸렌 용접기는 산소가 아세틸렌 용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용기부에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작업 중 날의 깨짐, 볼트 이완에 따른 파편 및 부품 비산으로 실습자가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구날 접촉부와 볼트 조임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 교류아크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검정합격품으로 설치한다. ○ 용접실습 전에는 용접기 홀더 손잡이의 접속상태 및 절연상태 등을 점검한다. ○ 기계 내 이물질 제거 및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한다 ○ 용접 작업 시 개인 보호장비(방염장갑, 앞치마, 헬멧, 보안경 등)를 착용 후 실시한다.

구분	안전관리 수칙
	○ 모든 전기·전자 기기는 사용을 중지 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 모든 전기·전자 기기는 정격전류에 알맞은 전선과 해당 전선을 보호하는 차단기를 사용한다.
전기 전자	○ 전원 배선을 연결할 때에는 전기 관련 기술자의 입회하에 연결하도록 한다. ○ 배선의 연결 부위는 반드시 절연테이프 이상의 절연내력을 갖는 절연물로 피복해야 한다.
	○ 실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장치의 전기배선은 반드시 방수기구를 사용한다. ○ 아크 발생 장치를 다룰 경우 보호경 또는 보호면을 반드시 착용한다. ○ 아크 발생 장소에 접근할 경우 전원차단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크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아크 발생 범위의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 모든 금속제 외함을 갖는 실험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접지 상태를 확인한다.
	○ 젖은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전기가 통하는 부위의 접촉은 금한다.○ 활선 회로를 조작할 경우에는 건조한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압 이상의 회로를 다룰 경우에는 절연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전기회로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모든 전기·전자 장치는 정격전압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전원의 누전차단기의 적색 버튼을 눌러서 누전차단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연구실 내 난방용 전열 기구 사용을 금한다.○ 하나의 전원 코드에 문어발식 접속으로 인한 과부하를 피해야 한다.
	○ 전처리시설의 설치 시 실험공간과 연구용 공간을 별도로 구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 간을 확보한다.
	○ 각종 기계·기구에는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는 실험에는 레이저 차광용 보안경을 착용하고, 레이저 장치는 반사하는 벽이 없어야 한다.
물리	○ 전처리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는 환기설비, 폭발에 대비한 방호벽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한다.
卢니	○ 온도계, 압력계, 레벨 표시계 등 계측기가 부착되어있는 기기는 계측기의 값이 정확하
	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고온·저온의 작업 시 방열복, 내열 장갑, 보안경, 보안면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화기사용 및 유해물질을 이용한 실험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전처리시설에서 상호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성 및 무기성 물질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 전처리시설별로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구분	안전관리 수칙
화 화 화 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특성 및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화학약품을 이용한 실험은 흄후드에서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후드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화학약품은 성상별(금수성, 부식성, 독성 등)로 분류하여 약품전용 시약장에 보관한다. 실험실 내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유독성 약품은 별도의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매액은 종류별로 보관하고, 용기에 라벨을 부착한다. 모든 시약의 용기에는 표식을 전면부에 부착한다. 유해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 갔을 경우에 신속히 물로 세척한다. 실험 중 배기후드의 문은 최소(1/3이하)로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발열반응 화학 실험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 실험에 임한다. 연구실과 저장소 사이에 시약을 이동할 경우 안전한 운반 장비를 사용한다. 유기/무기물질은 시약장에 분류하여 증기를 흡기할 수 있는 장치에 보관한다. 실험폐액은 절대로 배수구에 곧바로 투입하지 않고 절차에 의거하여 배출해야 한다. 유기계, 산계, 알칼리계, 무기계 등의 폐액은 별도 보관하여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한다. 폐액처리 의뢰 전표를 활용하여 실험폐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폐액저장 용기에 기타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폐액저장 용기는 반드시 2인 이상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반한다.
생물	 ○ 연구실 출입문은 닫아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연구실에 출입하지 않는다. ○ 연구실에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생물안전 등급(Biosafety Level)에 관한 표시가 출입 문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연구실의 책임자는 모든 실험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실험생물 주의사항 및 관리절차요령을 정확히 숙지 후 실험한다. ○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고 보존하는 장소(예: 연구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재 해(Biohazard)' 표시를 붙이도록 한다. ○ 실험 종료 후 실험대를 소독하여야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 예방을 위해 즉시 소독해야 한다. ○ 오염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한다. ○ 동물사육실의 필수적인 설비인 환기장치, 온도조절장치, 수세설비, 안전전원장치 등이 정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 관리한다. ○ 감염성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은 구분하여 관리하고, 감염성 폐기물의 용기 뚜껑은 항시 덮어 놓아 실내오염을 방지한다. ○ 미생물의 전이 및 오염 위험이 있으므로 실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공동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연구실 안전현황표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기관명					구 분			학 [!] 설(연)		년구 기관 타	
	연	!구실명 ²⁾									
	연-	구실 위치					돧	<u>=</u>	충		호
연구실 개요	연구 분야 (복수선택 가능)		□ 화학/□ 기계/□ 전기/□ 의학/	물 전	공 리 자 물		에	축 / 환 너지 / 자			
	연구	실책임자명			연락치	H (e−ma	ail 포	함)			
		실안전관리 남당자명			연락치	Η(e-ma					
비상연락처 ³⁾		처 ³⁾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처리기관(소방서 등)					원 : 타 :			
연구실 수행 연구개발활동명 ⁴⁾ (실험/연구과제명)			1. 2. :								
		연 번	이 름 (성별 표시)	이 름 (성별 표시) 직 위5) (교수/연구원/학생 등)							
연구 활동 종	· · · ·										
현황											
		연 번	기자재명 (연구기구 기계·장비)		규 격	(수량)		활용 용	용도	비고	<u>1</u>
주요 기자지											
기사 현황											

연구실 유해인자										
	1									
화학물질 ⁶⁾	□ 폭발성 · 물 반응· □ 발화성 · □ 금속부식	성 물질	- 보유 물 - - - -		민화성 물질 난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가 스 ⁷⁾	□ 가연성(되 □ 산화성기 □ 독성가의	가스 스	고압가스							
- 보유 생물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체 고위험병원체를 제외한 제3 위험군 고위험병원체를 제외한 제4 위험군 고위험병원체를 제외한 제4 위험군 유전자변형생물체 (미생물, 동물, 식물 포함)										
물리적 유해인자	□ 소음 □ 이상기온 □ 전기 □ 기 타 (
24시간 가동여부	□ 보유									
		개인보호구	현황 및 =	수량 ⁸⁾						
보안경/고글/보안면	안전	전화/내화학	장화/절		귀마개/귀덮개					
레이저 보안경		연장화 안전장[<u></u>		실험실 가운					
안전모/머리커버		방진/방독/	송기		보호복					
		$\Pi \Lambda A$			·					
기타		마스크								
기타	2	마스크 난전장비 및	설비 보유	·현황						
기타	2 □ 비상샤워시설	<u> </u> 선장비 및	설비 보유 흄후드	·현황	□ 국소배기장치					
	 I	· 산전장비 및	흄후드	-현황		Ų				
□ 세안설비(Eye washer)	□ 비상샤워시설	난전장비 및 ! □ AVS) □	흄후드	اً الأ	□ 국소배기장치	Ų				
□ 세안설비(Eye washer) □ 가스누출경보장치	□ 비상샤워시설	난전장비 및 ! (AVS)	흄후드 중화제독장:	⊼l(Scrubber)	□ 국소배기장치 □ 가스실린더캐비병	Í.				
 □ 세안설비(Eye washer) □ 가스누출경보장치 □ 케미컬누출대응킷 	□ 비상샤워시설 □ 자동차단밸브(□ 유(油)흡착포	난전장비 및 ! (AVS)	흄후드 중화제독장: 안전폐액통	⊼l(Scrubber)	□ 국소배기장치 □ 가스실린더캐비년	Ų				
 □ 세안설비(Eye washer) □ 가스누출경보장치 □ 케미컬누출대응킷 □ 시약보관캐비넷 	□ 비상샤워시설 □ 자동차단밸브(□ 유(油)흡착포	난전장비 및 !	흄후드 중화제독장: 안전폐액통	⊼l(Scrubber) - l(CGG)	□ 국소배기장치 □ 가스실린더캐비년	Í				
 □ 세안설비(Eye washer) □ 가스누출경보장치 □ 케미컬누출대응킷 □ 시약보관캐비넷 	□ 비상샤워시설 □ 자동차단밸브(□ 유(油)흡착포	난전장비 및 !	흄후드 중화제독장: 안전폐액통 불산치료저 배치현황 ⁹⁾	⊼l(Scrubber) - - (CGG) 	□ 국소배기장치 □ 가스실린더캐비년	Į				
 세안설비(Eye washer) 가스누출경보장치 케미컬누출대응킷 시약보관캐비넷 기타 (□ 비상샤워시설 □ 자동차단밸브(□ 유(油)흡착포 □ 글러브 박스	난전장비 및 !	흄후드 중화제독장: 안전폐액통 불산치료저 배치현황 ⁹⁾	치(Scrubber) 등 I(CGG)) E요 유해인지	□ 국소배기장치 □ 가스실린더캐비널 □ 레이저 방호장치 □ 소화기					

연구개발활동별(실험 · 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연구명	연구기간	
(실험・실습/연구과제명)	(실험· 실습/연구과제)	
연구(실험·실습/연구과제)		
주요 내용		
연구활동종사자_		

유해인자		유해인자 기본정보 <u>3</u>										
1) 화학물질	CAS NO ⁴⁾ 물질명 ①	보유 수량 (제조연도)	GHS등급 (위험, 경		화학물질의 유별 및 성질 ⁶ (1~6류)	위험 분석	필요 보호구 ⁷⁾					
	3											
2) 가 스	가스명	보유 수량		(=	가스종류 특정, 독성, 가연성, 고압, 액화 및 압축 등)	위험 분석	필요 보호구 ⁷⁾					
	① ② ③											
3) 생물체 ⁸⁾	생물체명		고위험병원체 해 당여 부		위험군 분류	위험 분석	필요 보호구 ⁷⁾					
(고위험병원체 및 제3,4위험군)	① ② ③											
4) Patri Salicial	기구명	유해인지	유종		크기 ¹⁰⁾	위험 분석	필요 보호구 ⁷⁾					
4) 물리적 유해인자 ⁹	① ② ③											

- 1) 연구실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실험(실험·실습, 연구과제 포함)에 대하여 각각 작성
- 2) 해당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이름을 작성. 단, 학부 실험 등 대규모 인원이 실험을 수행 또는 참여하는 경우 연구활동종사자 인원수 및 실험 시간만 작성
- 3) 해당 연구활동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물리적 유해인자 등을 작성
- 4) CAS No.(Chemical Abstract Service Resister Number,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는 제조·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 5)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GHS그림문자 및 신호어(위험, 경고 등)를 작성
- 6) 화학물질의 유별 및 성질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위험물 및 지정수량)을 따라 화학물질의 유별(1류∼6류) 및 성질(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등)을 구분하여 작성

화학물질의 유별 및 성질										
유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성질	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물 반응성 물질	인화성액체	자기 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 7) 필요보호구는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표(별지 제1호서식)'에서 작성한 개인보호구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 8) 생물체란 미생물 및 동물 등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 ※ 서식에 작성 시 제3.4위험군의 경우 고위험 병원체를 제외한 위험군만 작성
 - ※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 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1과 같다.
 - ※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며, 위험군별 해당 생물체 목록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별표2와 같다.

위험군 분류	분류 기준
제1위험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레이하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용이하며, 환경
세2위험군 	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생물체
페이이 취 그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하며,
제3위험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생물체
제A이하그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치명적이고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우며, 환경
제4위험군	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생물체

9) 물리적 유해인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별표11의2(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의 기준)
-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 진동: 착암기, 핸드 해머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립병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애 등의 국 소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 • 디스크 • 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 방사선: 직접·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중성 자선 등의 전자선
-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 ・이상기온: 고열・한랭・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동상・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 •분진: 대기 중에 부유하거나 비산강하(飛散降下)하는 미세한 고체상의 입자상 물질
- ※ 전기, 레이저, 위험기계·기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12 종, 조립에 의한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 포함) 등도 물리적 유해인자에 포함
- 10)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값 또는 제품 인증서 또는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리적 인자값 작성

[서식 7] 연구실사고 조사표 <개정 2022.01.25.>

연구실사고 조사표

※ 뒤쪽의	작성망법들	할 읽고 작성	강해 주시	시기 마라	며, []º	키는 애딩	아는 곳에	Ⅰ √ 표시를	할 압니나				(앞쪽)	
기관명							기곤 유형				연구기곤 그 밖의			
 주	소													
		사고임	일시	Ļ	크 월	일	시							
사고 발생 원인 및 발생 경위 ¹⁾		사 <u>.</u> 장:		학과(부 연구실당	-, -			(연구 분야 :)		
		연구 내		연구활동 수행 인원, 취급 물질·기계·설비,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의 개요 등 기록										
		사고 발생 상흥		불안전	불안전한 연구실 환경, 사고자나 동료 연구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기록									
		성명	성별	출생연 도	신분 ²⁾	상해부 위	상해유 형 ³⁾	상해 • 질병 코 드 ⁴⁾	치료 (예상) 기간	싱해 • 질병 완 치 여부	후유장 해여부 (1~14 급)	보상 여 부	보상 금 액	
	인적 피해	1)												
-1 -11		2												
피해 현황		3												
L. 6		4												
		⑤ ※ 인적 랍니다.	피해가	- 5명을	초과하는	- 경우,	'인적 교	기해 현횡	'부분만	별지로	추가 작	성해 주	시기 바	
	물적 피해	ī	피해물품					피해금액 약 백만					l 원	
조치 및 향후		보고 시	보고 시점까지 내부보고 등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치료 및 복구 등) 기록											
재발 방	지 대책										(신	상세계획은	은 별첨)	
		점검 • 진단				[] 실시(실시일:) [] 미실시(사유:)								
연구 안전관리			보험	험가입			[] 가입(가입일:) [] 미가입(사유:)							
			안건	전교육		[] 실시(실시일:) [] 미실시(사유:)								
별 	첨	재발 방 사고장소												
				연구주처	l의 장						()	서명 또는	= 인)	
(관계자 호 년 월		ļ	연구실인	ŀ전환경a	<u></u> 반리자					()	서명 또는	- 인)	
(년 월 일)			연구실착	임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1) 사고 발생 원인 및 발생 경위
- ※ 연구실사고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사고일시[년, 월, 일, 시(24시 기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당시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 내용(연구활동 수행 인원, 취급 물질・기계・설비,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의 개요 등), 사고 발생 당시 상황[불안전한 연구실 환경(기기 노후, 안전장치・설비 미설치 등), 사고자나 동료 연구자의 불안전한 행동(예시: 보호구 미착용, 넘어짐 등) 등]을 상세 히 적습니다.
- 2) 신분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기관 유형이 "대학"인 경우에는 ① 교수, ② 연구원, ③ 대학원생(석사·박사), ④ 대학생(학사, 전문학사)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적고,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
 - ※ 기관 유형이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① 연구자(근로자 신분을 지닌 사람), ② 학생연구원에 해당 하면 그 명칭을 적고,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
 - ※ 기관 유형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① 전담연구원, ② 연구보조원,
 - ③ 학생연구원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적고,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
- 3) 상해 유형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① 골절: 뼈가 부러진 상태
 - ② 탈구: 뼈마디가 삐어 어긋난 상태
 - ③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려서 살갗이 벗겨진 상처
 - ④ 찔림: 칼, 주사기 등에 찔린 상처
 - ⑤ 타박상: 받히거나 넘어지거나 하여 피부 표면에는 손상이 없으나 피하조직이나 내장이 손상된 상태
 - ⑥ 베임: 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
 - ① 이물: 체외에서 체내로 들어오거나 또는 체내에서 발생하여 조직과 익숙해지지 않은 물질이 체내에 있는 상태
 - ⑧ 난청: 청각기관의 장애로 청력이 약해지거나 들을 수 없는 상태
 - ⑨ 화상: 불이나 뜨거운 열에 데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
 - ⑩ 동상: 심한 추위로 피부가 얼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
 - ⑪ 전기상: 감전이나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상함 또는 그 상처
 - ⑫ 부식: 알칼리류, 산류, 금속 염류 따위의 부식독에 의하여 신체에 손상이 일어난 상태
- ③ 중독: 음식이나 내용·외용 약물 및 유해물질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상 태
- (4) 질식: 생체 또는 그 조직에서 갖가지 이유로 산소의 결핍, 이산화탄소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
 - ⑤ 감염: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상태
 - ⑥ 물림: 짐승, 독사 등에 물려 상처를 입음 또는 그 상처
 - ⑪ 긁힘: 동물에 긁혀서 생긴 상처
 - ⑧ 염좌: 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져 생긴 손상
 - ⑩ 절단: 예리한 도구 등으로 인하여 잘린 상처
 - ② 그 밖의 유형: ① ~ ③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해의 명칭을 적습니다.
- 4) 상해・질병 코드는 진단서에 표기된 상해・질병 코드(질병분류기호 등)를 적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정 2007.7.2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강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써 『원자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운반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재해와 방사선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수시출입자 그리고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 2.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써,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 나. 중성자선
 - 다. 감마선 및 엑스선
 - 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 3.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써,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및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엑스선 발생장치
 - 나. 사이크로트론
 - 다. 신크로트론
 - 라. 신크로사이크로트론
 - 마. 선형가속장치
 - 바. 베타트론
 - 사.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 아.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 차. 마이크로트론
- 카. 방사광가속기
- 타. 가속이온주입기
- 파.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4.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표면의 오염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써,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 5.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라 "방사성물질 등"이라 한다)로써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써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7. "개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제1호의 정의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중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8.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을 말한다.
- 10. "표면방사선량률"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 11. "유도공기중농도"라 함은 종사자가 1년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중의 농도로써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 12. "허용표면오염도"라 함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써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하며, "최대허용표면오염도"는 허용표면오염도에 10을 곱한 수량을 말한다.
- 13.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방사선이용시설의 운영·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 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

- 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4. "수시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
- 15.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써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 16. "분배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하는 곳을 말한다.
- 17. "폐기실"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해 오염된 폐기물을 위탁·자체폐기시까지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 18.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 19. "배기설비"라 함은 배기정화장치·배풍기·배기관 등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 20.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 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써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 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 · 배수구 등을 말한다.
- 21. "방사선이용시설"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분배·저장·폐기시설, 방사선 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 22. "자체처분"이라 함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중 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한 값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4 조 (조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 제 4 조의2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① 방사선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방사선이용시설에 관한 종합·조정·규제에 관한 사항
 - 2.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3. 방사선이용시설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과학부 학장이되고, 위원은 물리학과장, 화학과장, 생명과학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위원장 포함)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한다.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 5 조 (직무) 제4조의 조직에 따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 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며, 이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제4조의2의 제 2 항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 3. 방사선 안전관리자
 - 가. 총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나.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공주임교수 및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 라. 원자력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방사선 실무 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사용·저장·폐기·운반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 (3)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4)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5) 방사선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 (6)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4. 전공주임교수(학과장)

가. 방사선재해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사선이

용시설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통제 하에 해당 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다.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종사자

- 가.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전공주임교수의 관리하에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취급 ·저장·보관· 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전공주임교수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 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6 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총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 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요구를 받은 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취급기준

- 제 7 조 (구매절차)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수령·저장 등을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종사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②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 ③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리담당자는 승인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후 구매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허가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매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요구서 사본 1부를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유지한다.
- 제 8 조 (사용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반드시 허가 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한다.

-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는 항상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 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3.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의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 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할 것.
 -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 라. 방사선 작업 시 개인선량계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4. 사용시설에는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것.
- 5. 사용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또는 배기함으로써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6. 사용시설 안에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그 표면의 방사성동 위원소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거나 접촉하는 물질을 폐기하여 다음에 정하는 최대 허용표면오 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등 : 40kBq/m²
 -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 등 : 400kBq/m²
- 7. 사용시설 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8. 사용시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 9.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써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는 것은 방사선구역으로부터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등 : 4kBq/m²
 -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 등 : 40kBq/m²
- 10.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 11.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구역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지를 부착할 것.

- 제 9 조 (분배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할 때에는 제8조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 1. 방사성동위원소는 허가 받은 분배시설에서 행할 것.
 -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채로 분배할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할 것.
 - 가. 정상적인 분배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 3. 분배시설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는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 제 10 조 (저장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 보관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 2. 저장시설에는 그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 3.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함으로 써 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할 것.
 -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 라. 방사선작업시 개인선량계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할 것..
 - 4. 저장함(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는 그 용기)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보관 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
 - 5.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 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6.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도는 최대허용표면 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할 것.
 - 가.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 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한 용기에 넣을 것.
 - 나.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에서 균열 ·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써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 7.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써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도가 허용오염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관리구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하도록 할 것.
 - 8. 방사선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 9. 저장용기 또는 저장함에는 핵종. 수량 및 저장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 10.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할 것.
- 11. 저장시설에는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부착할 것.
- ②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시설 내에 보관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 전관리자가 보관한다.
- 제 11 조 (보관·처리·배출 및 폐기기준) ① 본교 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처리·배출 및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8조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6호 중 "사용시설"은 "보관·처리 및 배출시설"로 본다.
 - 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 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
 - 3. 제1호의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흡수재·기타 방사 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 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보관·처리 또는 배출할 것.
 - 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처리설비 안에서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재료로 고형화하여 보관할 것.
 - 다.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 할 것.
 - 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관리 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
 - 6.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액의 처리를 할 때 또는 동호 가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 또는 침전물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 7.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액체가 흘러 넘치기 어려운 구조일 것.
 - 나.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할 것.
 - 8. 제4호 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당해 용기에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밑받이·

흡수재·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 확산을 방지할 것.

- 9.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 할 때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10. 고체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분류수거 및 인도규정"에 의거 폐기업자에게 위탁폐기하거나 "처분 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이외에 제 8 조 제 3 호 내지 제 8 호의 규정에 따른다.
- ③ 보관폐기용기 또는 보관폐기함에는 핵종, 수량 및 보관폐기 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 ④ 방사선발생장치의 처리·처분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⑤ 밀봉선원은 보관폐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기술원에 위탁폐기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다만 Ir-192 선원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한전 원자력환경기술원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제 3 장 방사성물질 등 안전운반

- 제 12 조 (본교 내에서의 운반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본교 내에서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용기에 봉입할 것.
 - 2.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 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및 이를 적 재하는 차량의 표면 방사선량율 및 운반물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방사선량율

- (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외부 표면에서는 2mSv/h.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에는 10mSv/h
- (2) 외부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는 0.1mSv/h.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를 제외한다.
- (3) 운반수단의 표면은 2mSv/h
- (4)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m 거리에서는 0.1mSv/h
- (5)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에서는 0.02mSv/h

나. 표면오염도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 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cm²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4Bq/cm²,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 0.4Bq/cm²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운반물을 차량 등에 실을 때에는 운반 중에 이동·전도·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동일한 차량 등에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말 것.
- 5.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의 설치, 감시인의 배치 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반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차량 등의 출입을 제한할 것.
- 6.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은 서행하도록 할 것.
- 7.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동행하게 하거나 방사 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 8. 운반물 및 그 운반차량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 9. 종사자 외의 사람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10. 용기 밖의 포장물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기밀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 11. 액체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그 액체의 침투나 부식이 어려운 재료로 하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 ② 제 1 항 제 3 호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운반한다. 이 경우 당해 운반물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율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운반물 표면 : 10mSv/h
 - 2. 운반물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 0.1mSv/h
- ③ 제 1 항 제 1 호·제 2 호·제 5 호 내지 제 8 호의 규정은 방사선구역 안에서 하는 운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 1 항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용할 때 사용시설 분배시설· 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 시간이 매우 짧고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3 조 (본교 외에서의 운반기준) 방사성물질 등을 본교 외의 장소로 운반할 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방사선장해 예방조치

- 제 14 조 (방사선관리구역)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 1. 외부 방사선량율이 1주당 400µSv 이상인 곳

- 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이상인 곳
- 3. 물체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 제 15 조 (방사선구역 출입) 외부 방사선량율 등이 제14조에 정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 2.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해당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종사 자 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 3.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신발 등 인체가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제 16 조 (피폭방사선량의 관리) 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는 <별표2>와 같으며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7 조 (방사선량 등 측정) ①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장소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사선량의 경우
 - 가.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 방사선작업 전·후 및 매주
 - 나. 고정된 방사선 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 매월
 -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 매일
 - 라. 방사선관리구역: 매주
 -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표면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 : 작업하는 때마다
 -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 반출하는 때마다
 - 다. 배기구 및 배수구 : 배기 및 배수하는 때마다
 -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 가. 종사자 :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
 - 나.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 : 출입할 때마다
 - 다. 방사선시설의 일시출입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할 때마다
-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 가. 종사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작업을 종료한 때마다
 - 나.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출입할 때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 2.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 제 18 조 (건강진단) 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시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말초혈액중의 백혈구·적혈구의 수 및 혈색소의 양
 - 2. 심폐기능 등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 2. 방사선작업에 종사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별표2>의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3. <별표2>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 제 19 조 (기록 및 장부비치) ① 방사선작업 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 1.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일, 종류, 수량 및 대수
 -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개봉/밀봉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장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부)
 - 3. 방사성동위원소의 폐기일시, 방법, 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폐기장부)

- 4. 폐기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폐기장부)
- 5.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종사자 피폭선량 장부)
- 6.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 (종사자 건강진단 장부)
- 7.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 훈련장부)
- 8. 방사선량측정 및 오염상황측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량율 측정장부, 오염상황측정 장부)
- 9.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 (구매요구서)
- 10.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 ② 제 1 항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 5 호 및 6 호의 기록은 사용 폐지시 까지, 제 8 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 ③ 제 1 항의 장부 기록사항은 해당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서명을 득한다.
- 제 20 조 (교육훈련) ①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물론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시설보수 등을 위한 방사선시설 출입자, 시설견학자 및 방문자가 방사선원이나 그 어떤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며, 방사선 피폭시 올바른 대응조치 강구를 위하여 방사선안전 취급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 ② 기존종사자 및 신규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다.
 -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의 운반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운반전 운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종 사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개인별 숙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도 연간교육 계획(교육내용, 기간, 강사, 교재 등)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장비의 보정 등) ①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검·교정기간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보관시에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 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 ②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 등 방사선 구역에는 필요한 안전관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는 검·교정 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방사선측정기 또는 포켓도시메타 등을 특정기간에 편중되게 검·교정을 의뢰함으로써 방사선작업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간 검·교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 22 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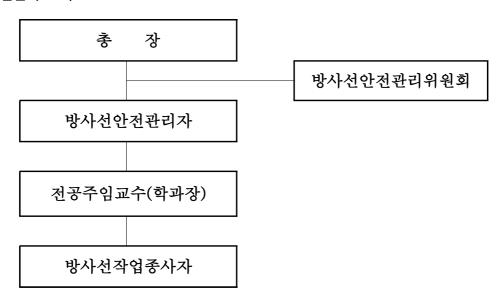
- 1.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관리구역 및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 입시간의 단축·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23 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 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방사선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방사성물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공기 중 및 수중허용농도가 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농도를 초과하거나, 작업종사자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선량한 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방사선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 경고
 -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
 - 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 제거
 - 라. 방사성물질 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금지
 - 마.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집게 또는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 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폭방사선량의 방지
 - ② 제 1 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 1. 제 1 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 제 24 조 (위험시의 조치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또한 아래 제2호 및 제7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고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1. 방사선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 2. 방사성 동위원소 등이 도난, 소재 불명이 된 때
- 3.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 4.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때
- 5. 방사선이용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 6. 방사성 물질 등의 운반에 있어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 7.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 8. 기타 원자력 법령에서 정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때
- 제 25 조 (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 1.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취득·사용·보유 및 폐기현황 (매분기 경과후 30일 이내)
 - 2.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및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 (매년 경과 후 30일 이내)
- 제 26 조 (작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 1. 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
 - 2. 본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
 - 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 받지 못한 자
 - 4. 만 18세 미만인자
 - 5.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제 27 조 (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관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이 개정되는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 제 28 조 (안전관리세칙)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2007.7.13)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사선관리 조직도



<별표 2> 선 량 한 도

구 분		방시선작업종사자	수시 출입자	일반인
1. 유효선량한도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연간 12mSv	연간 1mSv
	수정체	연간 150mSv	연간 15mSv	연간 15mSv
2. 등가선량 한도	손발 및 피부	연간 500mSv	연간 50mSv	연간 50mSv

- 1) 5년간이라 함은 1998년부터 계산하여 매 5년씩의 기간(예: 1998-2002)을 말한다.
- 2) 5년간 평균하여 연 1mSv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는 1 mSv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생물안전관리규정

- 제정 2015.07.01.
- 개정 2017. 10. 18.
- 개정 2021. 10. 20.
- 개정 2022. 01. 25.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등에 의하여 서강대학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부설 연구기관 등의 LMO 연구실과 이곳에 종사하는 교수,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01.25.>
- 제 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3. "유전자재조합분자"란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벡터)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
 - 4.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 조합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
 - 5. "LMO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행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 6.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 7. "동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 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사육시설과 해부 등 동물실험공간을 말한다.
 - 8. "식물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생육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 9. "LMO연구시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단위 LMO 연구실에서 안전관련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원 또는 조교장을 말한다.

- 10. "LMO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라 함은 단위 LMO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며 연구 활동 및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연구책임자(교원)를 말한다. <신설 2021.10.20.>
- 11. "생물안전관리자"라 함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안전관리센터 내에서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0.>
- 12. "생물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본교 생물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자로 다수의LMO 연구실을 운영하는 관련학과 학과장 중 총장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0.>
- 13.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통합고시에 정한 정의를 따른다. <신설 2021.10.20.>

제 2장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4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서강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라 한다.<개정 2017.10.18.>

제 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1.10.20.>

- 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환경방출을 위한 개발실험 승인 등
-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 신고, 수입 신고, 수출 통보 등
- 3. 생물안전 교육 ·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4.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장은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본교 생물안전관리 주요사항 논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시의장이 된다. <신설 2021.10.20.>
- ③ 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0.20.>
-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 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10.20.>

제 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인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0.18.>

- ② 위원장: 교학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하며, LMO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학장 및 학과의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설치·운영중인 LMO연구시설이 3개 미만인 대학(또는 학과)는 해당 연구시설의 시험·연구책임자가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7.10.18., 2022.01.25.>
- ④ 외부위원 : 위원장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추천한 관련 전문가를 위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 ⑤ 위촉위원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또는 교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보건관리자, 시설안전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둘 수 있다.

- 제 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LMO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가 필요한 생물이용 연구계획을 심의·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사안별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여한다.
 - ⑤ 학교 내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을 제·개정하고, 생물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한다.
- 제 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생물안전관리담당자(또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임명한다.

제 3 장 역할 및 책무

- 제 9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총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교수)를 임명하며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0.20.>
 - 1.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 4.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 5.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6.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7.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8.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LMO연구시설의 생물안전을 위한 사항
- 제 10조 (생물안전관리자) ① 총장은 생물안전관리자를 임명하며 생물안전관리자는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생물안전 확보 전반에 관한 사항
 - 2. 생물안전 교육·훈련 실시
 - 3. 실험실 순회 점검 및 생물안전 관련 수칙 이행 감독
 - 4. 생물안전 관련 사고 조사 및 대응과 보고에 관한 실무
 - 5.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6. 생물안전책임자를 보좌한다.
 - 7. 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자와 LMO 신고담당자로 구분할 수 있다. 생물안전관리자는 그 자격을 선임하며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LMO 신고담당자는 생물안전관리자 업무를 보조하며 기관 내 LMO 신고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01.25.>
 - ② 삭제 <2021.10.20.>
- 제11조(LMO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 LMO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시설 내에서 다음 각 사항들을 수행한다. <개정 2017.10.18.>
 - 1.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위해성 평가
 - 2.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감독
 -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 4.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 5.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한 생물안전사고 발생 및 기타 관련사항등을 학교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 게 보고
- 6.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7. 실험생물체 등의 사용 폐기 등 관리 대한 책임 <신설 2021.10.20.>
- 8.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 <신설 2021.10.20.>
- 9. 해당 실험실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신설 2021.10.20.>
- 10. 실험실 특성에 맞는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신설 2021.10.20.>
- 제 12조 (LMO연구시설 안전관리담당자) ①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8.>
 - 1. 연구실 안전수칙 준수
 - 2. LMO관련 각종 관리대장 작성 및 폐기물 처리 관리
 - 3. 단위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LMO 안전교육 실시
 - 4. LMO 안전표식등의 유지 관리
 - 5.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및 보고
 - 6.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② LMO연구시설 안전관리담당자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활동 전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사항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8.>
- 제 13조(LMO연구활동종사자) ① LMO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을 위해 생물안전관리책임 자와 생물안전관리자 또는 LMO연구시설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점검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10.18., 2022.01.25.>
 -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생물안전교육·훈련 이수
 - 2. 생물안전관리 규정 준수
 -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생물안전사고를 시험·연구책임자에게 보고
 - 4. 기타 생물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를 받은 사항의 이행
 - 5.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 <신설 2021.10.20.>
- 제 14조(교육·훈련) ① 총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생물안전관리 전문가로부터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물안전책임자는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연 1회 이상(2시간 이상) 생물안 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 LMO법 제도에 관한 사항
 - 2.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 기술
 - 3.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 4.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5.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6. 생물안전관리규정용의 준수사항
- 제 15조(안전점검)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종사자는 실험 활동 시작 전 또는 후 매일 1회 이상 해당 실험 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한다.
 - ② 연구종사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연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연구책임자는 매월 일상점검 결과를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④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 1회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⑤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4항 및 기타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⑥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주의, 경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⑦ 안전점검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본조 신설 2021.10.20.]

- 제16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복, 보호장갑, 마스크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1. 고온 및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 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4. 기타 위해물질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
 - 5. 연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연구종사자는 보호구는 분실, 파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본조 신설 2021.10.20.]

제17조(표지 부착) ①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실험실의 출입문 앞에 취급병원 체명, 생물안전등급, 안전관리담당자, 실험실책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0.20.]

제 4장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분류

- 제 18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및 설치·운영신고) ①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의 분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에 따라 [별표1]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2017.10.18.>
 - ②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관계부처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0.18.>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등급 및 4등급인 경우에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의,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은 질병관리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0.18.>

[제15조에서 이동 <2021.10.20.>]

제 19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다. 다만, 법 통합고시 제2-1조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7.10.18., 2021.10.20.>

[제16조에서 이동 <2021.10.20.>]

제20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폐쇄)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라 신고하여 설치 · 운영 중인 연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시설 폐쇄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0.20.]

제 21조(수출통보) 시험·연구용 LMO를 수출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제17조에서 이동 <2021.10.20.>]

제22조 (등급별 연구시설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시에는 [별표 2]의 연구시설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별표3]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제18조에서 이동 <2021.10.20.>]

제23조 (폐기물 관리)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생물배양액, 동물사체 등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시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LMO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는 실험 폐기물 처리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여 준수하고 안전한 폐기물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0.18.>

[제19조에서 이동 <2021.10.20.>]

- 제24조 (보존관리)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보존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바이알, 튜브, 앰플 등 병원체 보존 단위용기에 해당 병원체명과 제조일 관련 정보를 표기하거나 표기된 라벨을 부착할 것
 - 2.병원체의 특성 및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동결, 동결건조, 냉장, 실온)으로 보존할 것
- 3.고위험병원체의 보존관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존관리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 신설 2021.10.20.]
- 제25조 (사고 시 조치)① LMO연구활동종사자가 생물체를 취급하던 중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등의 사고,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 물질에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LMO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처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10.18.>
 - ② LMO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하게 조치하며 사고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개정 2017.10.18.>
 - ③ LMO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는 생물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및 응급조치 보고 체계를 숙지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개정 2017.10.18.>

[제20조에서 이동 <2021.10.20.>]

제26조 (규정의 준용 및 시행세칙)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고시, 지침 등을 따른다. 이 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세칙을 정한다. <신설 2017.10.18.>

[제21조에서 이동 <2021.10.2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8.)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20.)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1.25.)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등급	대상	연구시설 신고/허가	생물체 분류 [*]
1등급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제1위험군 생물체
2등급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 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제2위험군 생물체
3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 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제3위험군 생물체
4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제4위험군 생물체

^{*}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별 취급하는 해당 생물체 목록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따른다.

[별표 2]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개정 2021.10.20.> 가. 일반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 설치기준

	ス 스 기 원	ઌ	·전관	리둥	급
	준 수 사 항	1	2	3	4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위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	-	필수	필수
및 접근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_	-	권장	필수
	공조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_	-	권장	필수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급 연구	_	_	권장	필수
	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_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_	-	필수	
시원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용	_	_	권장	필수
실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	-	필수	필수
구역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혜파 필터 장착	_	-	필수	필수
	내부벽: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_	_	_	필수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_	_	필수	필수
	의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 이상 유지(실간차압 설정				
	범위±30% 변동허용)	-	_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_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_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_	-	 권장	필수
공기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_	-	필수	필수
조절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_	-	권장	필수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치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	_	_	필수	필수
	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9 7	51.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3등급 연구				
	시설은 1,0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	-	_	필수	필수
	시설은 2,5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 이내)				
실험자 실험자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_	권장	필수	필수
	연구시설은 눈세척기 제외) 설치				
안전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_	_	필수	필수
보호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아아보 미 아츠고기 ㅎㅎ자기 서기(케비쳐 4드그 여그지서의 게이)			_	필수 필수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구 필수
실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ET	월		필구 필수
장비	생물년전역 B에 들시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_	_ _면 ~	필구 필수	필구 필수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				
	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1 -1 -1 -1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				٠
폐기물	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처리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耐入	ᆔᄉ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딤	_	_	필수	필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혜파 필터 처리)	_	권장	필수	필수
기타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기다 설비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_	권장	필수	山人
걸 비	베틴크 쿠표 중시 중시 결사	_	년경	ヨー	필수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2	3	4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	필수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_	_	필수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_	_	필수	필수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			<u>'</u>
		1	2	3	4
21 =1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실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구역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 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구역내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활동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유입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_	_	권장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 (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안전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확보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_	권장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_	권장	필수	필수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 4등급 연구시설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의료체계 내용 포함)				
폐기물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처리	페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나. 동물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	리둥급	
	ਦ ⊤ ^ਾ ४	1	2	3	4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_	_	필수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_	_	권장	필수
	공조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_	-	권장	필수
시원시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급 연구 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	-	권장	필수
실험실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_	_	필수	필수
위치	동물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및 접근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권장	권장	권 장	권 장
	생물학적 제제 마련 등 일반 BL3 실험구역 마련	_	_	필수	필수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_	필수	필수	필수
	동물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_	 권장	필수	필수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 공간(외과, 해부 실험 수행 등)의 분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연구시설 내 사료 및 깔짚 등의 저장 설비 또는 공간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케이지와 동물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폐기 전의 동물 사체 보관 장소 및 처리설비는 시설 내 별도의 밀폐 구역에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및 역류방지 장치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_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용	_	-	르 · 필수	릴 필수
시원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_	_	필수	필수
실험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 장착	_	-	필수	필수
구역	내부벽: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	_	-	필수
	동물사육실에 복층유리의 관찰창 설치	_	_	필수	필수
	동물 탈출방지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필수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 이상 유지(실간차압 설정 범위±30% 변동허용)	_	_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_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_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필수	ョー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월	될 필수
	에비용 매기월터닉스 실시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치			편성 필수	필구 필수
 공기	배기 에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블	-	l	ヨT	五十
조절 조절	배기 해과 필터 선단 무군은 기일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플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_	-	필수	필수
	배기 혜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혜파 필터 박스: 3등급 연구 시설은 1,0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 시설은 2,5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 이내)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권장	필수	필수
	급기 딕트에 에파 필터 실시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_	전상 권장	필수 필수	필구 필수
	별도의 급매기 닉트 설시 배기에 카본필터 등 냄새제거 장치 설치	- 권장	건상 권장	필수 필수	필구 필수
	매기에 가끈들다 등 밤새세기 경시 결시 동물실은 외부와의 최소음압 70Pa 유지	건강 -	- 변경 -	될 필수	된 필수
)1=1 ·			_	된丁	10円
실험자 안전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 세척기 제외)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_	필수	필수
., .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	필수
보호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	필수
	헤파 필터 장착 전동식 호흡 보호 장구 마련(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 제외)	_	_	필수	필수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실험	헤파 필터 장착 급·배기 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별도 덕트 연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장비	케이지는 동물의 움직임 등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만든 장비 설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부검 및 케이지 등을 교체할 수 있는 음압 기능보유 작업대 등 설비 또는 작업 공간 마련	_	권장	필수	필수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五上	五上	五十	五十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				
 폐기물	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거리	르^//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				
^ 4	의 1.5배 이상,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kPa 이상)에서	_	_	필수	필수
	10분 이상 견딤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_	권장	필수	필수
	서디기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서울되구와 현실되는 중한 서울 및 서울 대구 오다다당 정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기타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_	필수	필수
기기 설비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_	_	필수	필수
['] 큰비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_	_	필수	필수
	르시 동물 사육 및 동물 실험 공간 배기필터 전단에 프리필터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밀폐형케이지 사용 공간 제외)		1278	ヨT	12丁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	리둥급	•
	च T /Y 8	1	2	3	4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_	권장	필수	필수
구역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필수	필수	필수	필수
_ ,,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린	モー	린	21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필수	피수	필수	필수
	씻기	린	e 1	21	21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탈의	1.0	= 1	= 1	
구역내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1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활동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금지	1210	2丁	三丁	三丁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_, ,	د د	٠, ,	_, ,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동물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동물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중/대동물 제외)	_	권장	필수	필수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12丁	包丁	「包丁	恒十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획득하거나 태어난지				
	72시간 내에 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는 케이지에 표기)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三 1	包一	三 1	三 1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	필수	필수	필수	필수
	(Biohazard)" 표시 등 부착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윤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생물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				
	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안전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7) 7)	ᆔᄉ	ᆔᄉ
확보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_	권장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		권장	필수	필수
	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_	건78	五十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_	권장	필수	필수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 4등급 연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3, 4등급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연구시설의 경우 훈증 또는 고압증기멸균)	_			
	동물탈출 시 연구자 조치 절차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전 폐기물 :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처리	- 베기물는 생물막식 활성을 세기하여 서디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1.1	[필요케시크 시나에 네안 비장 박년	될ㅜ	ヨエ	필수	필수

다. 식물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2	3	4	
실험실	온실(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3, 4등급의 경우, 밀폐구역(전실, 실험실): 일반구역과 구분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및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준 수 사 항	(간전관	리등급	7
		1	2	3	4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접근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_	_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_	권장	필수
2] =1	시설내부: 내벽, 천장, 바닥 등은 이음새가 없고, 화학적 살균,			可入	可入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4등급 연구시설은 내관 부분 완	_	_	필수	필수
	전 밀폐) 온실바닥 : 불투성바닥(콘크리트 등)	필수	필수		
실험	배출수 집수장치 설치	- 5T	글 건장	필수	필수
구역	표준 온실유리나 플라스틱 재질 이용	필수	필수	_ 	-
	심화 플라스틱 유리 사용하여 완전 봉쇄	-	-	필수	필수
	30mesh 크기 이상의 방충망 사용	필수	필수	_	-
	방충망 및 창 허용되지 않음	_	_	필수	필수
	실험실 내부 공기: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단, 인체위해성이				
	없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취급할 경우, 3등급 시설에 한해 부	_	_	필수	필수
	분 재순환 허용)				
공기	독립적인 공기공급 및 배출을 위한 통풍시스템		_	필수	
조절	역류방지용 댐퍼를 적용한 환기 팬 설치	_	_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_	_	권장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설치)	_	_	필수	필수
	실시)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 시설 설치	필수	필수	<u>-</u>	
		包1			
실험자	4등급 연구시설은 눈 세척기 제외)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은 B 1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ــــ ع	٠, ،
보호	제외)	_	_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_	_	_	필수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_	필수	필수	필수
시원	설치)		- '	- 1	
실험	작업대는 이음새가 없도록 하며 화학물질 저항성을 가진 재질	_	_	필수	필수
장비	사용 필요한 경우, 폐쇄형의 식물재배장치(예: 병, 플라스틱 상자)				
	필요만 경구, 페페용의 극물세배경시(에, 성, 들다드릭 경사) 를 사용하여 격리 재배	-	권장	필수	필수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				
	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배수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및	멸균 설비 설치)				
^ㅈ 폐기물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				
	력의 1.5배,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kPa 이상)에서 10분	_	_	필수	필수
처리	이상 견딤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_	권장	필수	필수
	처리) 배출수의 집수: 오염제거 후 배출			필수	필수
	매물ㅜ의 십구·오염세기 우 매물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기타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_			필수
설비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_	_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_	_	필수	
	설치			ヨT	セエ

2. 운영기준

	ストルデ	ę	<u></u>	리등급	3
	준 수 사 항	1	2	3	4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_		필수	
실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_		필수	
구역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식물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밀폐온실 출입 시, 탈의실, 샤워실, 에어락 장치 통과	_	_	_	필수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구역내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 활동	고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 0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필수		필수	
	관리방안 마련	五十	五十	1917	27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_	_	권장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온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물질 이동 등에 대한 기록	_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인전위원회 구성	권장	피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생물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필수		
안전 확보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u> </u>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_	권장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_	권장	필수	필수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_	 권장	필수	필수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 4등급	필수		릴 필수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해충 방제 프로그램	필수	_ ·	그 · 필수	_ ·
	애궁 경세 프로그램 온실바닥과 작업대의 주기적인 오염 제거	宣下 권장		될 무 필수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테키ㅁ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폐기물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처리	식물체, 종자, 미생물 등 생물체가 포함된 폐수는 생물학적			필수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E 1	e 1	= 1	۷.

라. 곤충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2	3	4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_		필수 필수		
	기사세, 장비 등 반물법을 위한 단 또는 무역 설시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월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_	-		필구 필수	
	공조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_	_		필수	
실험실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급 연구 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_	_		필수	
위치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_	필수	피스	
및 접근	곤충사육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르 · 필수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권장		트 권장		
	생물학적 제제 마련 등 일반 BL3 실험구역 마련	-	-	필수		
***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_	필수	필수	필수	
	곤충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_	권장	필수	필수	
	케이지와 곤충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역류방지 장치 및 곤충탈출 방지 설치(곤충탈출방지는 2등급 이상 필수)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1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용	-	-	권장	필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_	_	필수	필수	
실험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 장착	-	-	필수	필수	
구역	내부벽: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_	-	_	필수	
	방충망 또는 끈끈이 등 탈출방지 설비 설치, 단, 모기 등 날 수 있는 곤충을 취급할 경우 밀폐 구역(주출입구 및 사육구역 전실) 출입문에 에어커튼 등 탈출방지 시설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_	필수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 이상 유지(실간차압 설정 범위±30% 변동허용)	_	_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_	-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_	-	필수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공기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_	_	권장	필수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치	-	_	필수	필수	
조절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_	_	필수	필수	
	배기 혜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혜파 필터 박스: 3등급 연구시설은 1,0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시설은 2,5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 이내)	_	_	필수	필수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_	권장	필수		
실험자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 세척기 제외) 설치	_	권장		필수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_	_	핀수	필수	
안전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_		<u>-</u>	ョー 필수	
보호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_			필수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2	3	4
	헤파 필터 장착 전동식 호흡 보호 장구 마련(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 제외)	_	_	필수	필수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실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_	권장	필수	필수
장비	케이지는 곤충 탈출 방지 기능이 있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만든 장비 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곤충 사육(배양 포함) 및 감염 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밀폐장비 마련	_	권장	필수	필수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 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처리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딤	_	-	필수	필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기타 설비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_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_	-	필수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_	-	필수	필수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3
	ፈ 1 ′ነ 8		2	3	4
21 =1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_	권장	필수	필수
구역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 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구역내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활동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곤충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곤충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_	권장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곤충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는 케이지에 표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 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곤충 탈출 방지 방안(모니터링 포함) 마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 안전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 (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3
			2	3	4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확보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_	권장	필수	필수
4 = 1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_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_	권장	필수	필수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 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기관 내 곤충 안전관리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곤충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사용된 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3, 4등급 연구 시설의 경우 훈증 또는 고압증기멸균)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곤충탈출 시 연구자 조치 절차 마련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케이지에 식별 가능한 표식(종, 계통, 연구책임자 등) 부착		필수		
테기모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폐기물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처리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마. 어류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 등급			
		1	2	3	4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권	권	필	필
		장	장	수	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권	권	필	필
	등)	장	장기	수	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 장	 권 장	필 수	필 수
		Ö	'o 권	필	필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장	수	수
 실험실	기기에 지네 드 비즈이어 이런 므 ㅠㄴ 그런 서귀		권	필	필
무 마 든 위치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_	장	수	수
1 '' '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_	_	필	필
및접근	7 7 31 6 0 2 2 1 0 1 0 3 1 2 3 (1 0 2 3 7 1 0)			수	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_	_	권	필
				장	수
	공조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_	_	권	필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			장 권	수 필
	글쎄시절. 근크디드릭에 물니까여선 물모의 물임신흥산물(4등) 급 연구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	_	전 장	^멸 수
				<u>°</u> 필	필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_	_	수	수

	어류사육실과 어류실험 공간(외과, 해부 실험 수행 등)의 분 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반입된 어류를 위한 독립 사육 수조 마련	_	권 장	필 수	필 수
	사육수조와 관련 기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_	권 장	필 수	필 수
	어류 시설 내 사료 및 여과재 등의 사육용품 저장 공간 설치	-	권 장	권 장	필 수
	폐기 전의 어류 사체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권 장	필 수	필 수 -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권 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 용	-	-	필 수	필 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 제 사용	-	_	필 수	필 수
실험 구역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 장착	_	_	필 수	필 수
	내부벽: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 도록 설치	-	-	_	필 수
	수조 및 여과재 등을 교체할 수 있는 공간 및 작업대 마련	-	권 장	권 장	필 수
	어류 사육실에 물넘침 방지턱 등 시설 구비	권 장	필 수	필 수	필 수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이상 유지(실간차	_	_	필수	필수
	압 설정 범위±30% 변동허용)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_	_	필수	
	이상)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	_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_	권장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설치)	-	_	필수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	-	-	권장	필수
	급배가 먹으에 탁규팅시험과(Back draft damper, BDD) 결 최	-	_	필수	필수
공기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 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	_	필수	필수
조절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3등급 연구시설은 1,0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0%이내), 4등급 연구시설은 2,5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이내)	-	_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_	_	권 장	필 수
	역류방지용 댐퍼를 적용한 환기팬 설치	-	-	필 수	필 수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	필 수	필 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_	_	권 장	필 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_	_	필 수	필 수

사육용	배수 시 어류(수정란 및 자·치어 포함) 유출 방지를 위한 차단망 설치	필 수	필 수	필 수	필 수
급배수	배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권 장	권 장	필 수	필 수
조절	생물학적활성 제거를 위한 배수 저장탱크 이용	권 장	권 장	필 수	필 수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 세척기 제외) 설치	_	권 장	필 수	필 수
실험자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 외)	_	-	필 수	필 수
안전 보호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_	필 수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_	_	_	필 수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필 수	필 수	필 수	필 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권 장	필 수	필 수
실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권 장	필 수	필 수
장비	유전자변형 어류의 수조 탈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권 장	권 장	필 수	필 수
	수조는 진동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설계	_	필수	필수	필수
	부검 및 측정 등을 위한 작업대 등 설비 마련	-	권장	권장	필 수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 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처리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딤	_	_	필수	필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_	_	필수	필수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권 장	권 장	필 수	필 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_	권 장	필 수	필 수
기타 설비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_	_	· 필 수	- 필 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_	_	· 필 수	필 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_	_	· 필 수	필 수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ቲ ተ ^የ የ						
실험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구시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_	권장	필수	필수		
十年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T	T		T
출입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	피수	필수	피수	피수
	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1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피스	필수	피스	피스
	손 씻기	五十	五十	五十	ヨエ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	-1-1	ᆔᅩ	ᆔᅩ	ᆔᅩ
	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当个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피수	필수	피수	피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필수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릴 · 필수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五十	五十	五十	五十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금지))) <u>}</u>) <u>}</u>) <u>}</u>
실험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世午
i i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피수	필수	피수	피수
구역내	마련			= 1	- 1
활동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	피스	필수	피스	피스
	독)	包1	包1	_ '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_	_	권장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어류가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	L	L	L	L
	시 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사육수조에 표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어류 반입 및 이동 시 밀폐 용기 이용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Biohazard)" 표시 등 부착	7) 7)	ᆔᄉ	ᆔᄉ	ᆔᄉ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상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피수	필수	피수	피수
	교육 실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_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	7) 7)	ᆔᅩ	ᆔᆺ	ᆔᄉ
안전	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별수
확보	· · · · · · · · · · · · · · · · · · ·		-711	د ایب	1 2
목포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권장	필수	벌수
	시험 · 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		_, ,		
	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_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l –	권장	필수	피스
-	비상시 행동 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 4등급 연	l			
	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다시설은 의료세계 내용 포함) 어류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山人	필수	山人	山人
-		ヨエ	巨丁	巨丁	五十
	어류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교육	필수	필수	필수	필수
	/N A1		1		
ļ-	실시	-1 -1) 2	1 2	1 2
	실험어류 뜰채 등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필수		
폐기물	실험어류 뜰채 등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실험어류 뜰채 등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별표 3]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관리·관리대장 <개정 2021.10.20.>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7호서식]

시험 · 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 관리대장

일 자	LMO정 보		MO정 보		수입	정보	(운	국내 • 이동 • 취급정 _{반, 수출} 등)	외 시 ! 보 :, 분양 도착지 점	보관	·정보	수	량정	보	ні	서	명
연월 일	명칭	숙주 생물체	삽입 유전자	공여 생물체	매 도 자 정 보		취 급 유형	(기관명	도착지 점 (기관명 및 시설번 호)		시설등 급	입고 량	사용 량	보관 량	비고	취급 자	책임 자 (부서 장)
										1							1

※ 기재방법

- 1. LMO 정보 : 관리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숙주생물체, 삽입 유전자 및 공여생물체 정보를 기재합니다.
- 2. 수입정보 : 수입을 하는 매도자 명(수입 대행 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기관명, 또는 매도자 성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한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3. 국내•외 이동시 취급정보 : ① 취급유형 유전자변형생물체 이동에 대한 유형(운반, 수출, 분양 등) 정보를 기입합니다.
 - ② 출발지점(시설번호) / 도착지점(시설번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동 전·후 기관명 및 시설 번호를 기재합니다(단, 해외 시설의 경우 기관명 및 담당자명 등 기재).
- 4. 보관정보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장기 보관(냉동보관 또는 액체질소 보관 등) 할 경우에만 보관 장소(시설번호) 및 시설등급을 기 재합니다.
- 5. 수량정보 : 작성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입고량(수입, 구매 등)/사용량(수출, 분양, 이동 등)/보관 량을 기재합니다.
- 6. 비고 : 입·출고 및 보관량 변동 사유 등 부가적인 설명을 기재합니다.
- 7.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2022. 02. 08 변경 서강 일상회복 지원단

서강대학교는 본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 예방 활동 및 코로나 19 확 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

I. 코로나 19 대응 기본 방향

- 1.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 서강 일상회복 지원단 : 교학부총장(단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u>및</u> <u>학생 대표</u>로 서강 일상회복 지원단을 구성하고 코로나 19 예방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등을 총괄한다. 간사는 총무처에서 담당한다.
 - 서강 일상회복 실무대책반 : 인사총무팀장을 팀장으로 안전관리센터 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보건실), 학사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기 획예산팀장, 대학원 행정팀장, 국제팀장, 국제문화교육원 팀장, 기 숙사 사감 등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서강 일상회복 지원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실무대책반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서의 행정팀장 또는 담당자를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 확진자가 소속된행정팀에서는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즉시 확진자의 <u>동선</u>, 확진 경위, 밀접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보건실과 인사총무팀에 보고한다.
 - 교육부, 보건소 등 유관기관에 대한 <u>확진자 발생 보고, 현장 점검</u> 및 대외 연락 등은 학생문화처 장애학생센터(보건실)에서 담당한다.

2.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

- 안전관리센터는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 및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고, 시설팀, 인사총무팀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 장애학생지원센터(보건실)와 인사총무팀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의 방역지침, 교내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교내동선 등 최신 자료를 홈페 이지에 공지하여 서강구성원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동 발열체크 기기를 건물 현관에 설치하여 고열이 감지될 경우 즉 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건물 출입 시 캡스 장비에 신분증 태그하여 비상 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사무실 방문자는 방문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코로나 19 감염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정문과 후문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건물별로 적절한 관리 수단을 이용하여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 대면수업 운영 기준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코로나 19 상황 에 따라 학원장회의 등 관련 학교 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 대면 수업의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강의실 출입 시 손세정을 해야 한다. 대면수업이 있는 강의실은 매일 알코 올로 책걸상을 소독하며, 필요한 경우 분무소독을 추가한다.

Ⅱ. 확진자 발생 시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신속히 대응한다.

- 1. 확진자 발생 시 보고
- 확진자 본인 또는 확진자를 <u>인지</u>한 교내 구성원은 즉시 <u>확진자가 소속</u> 된 행정팀에 알린다.
 - ※ 학부/대학원생, 교원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또는 소속 대학원 행정팀(외국인 유학생 포함)
 - ※ 한국어교육원 학생 : 국제문화교육원 총무팀

※ 그 외 : 소속 행정부서 또는 업무 유관 행정부서

- 확진자를 <u>인지한 행정팀에서는</u> 부서팀장과 인사총무팀장에게 즉시 알린다. 인사총무팀장은 보고 받은 즉시 총무처장, 교학부총장, 총장 순으로 보고한다.
- 해당 부서팀장은 동시에 부서장(학장, 처장, 관장 등)에게 보고한다.
- 해당 행정팀은 확진자의 동선과 확진 경위, 밀접접촉자 등 세부내용을 확진자로부터 파악하고, 보고자료 양식(붙임2)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보건실과 인사총무팀에 보고한다.
- <u>장애학생지원센터(보건실)는 해당 행정팀에서 작성한 확진자 보고자료</u> 를 수합, 확인하고 교육부,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보고한다.

2. 서강 일상회복 지원단 소집

- 확진자 보고를 받은 서강 일상회복 지원단장(교학부총장, 이하 단장) 은 서강 일상회복 지원단(비대면, SNS를 통한 회의 포함) 회의를 즉시 소집하여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관련 부서에 하 달하고 조치토록 한다.

Ⅲ.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 발생 후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총무처 인사총무팀(705-8135)

- 확진자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확진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조치한다.
- 사안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단장에게 보고하고, 확진자 또는 밀 접접촉자가 직원일 경우 근태관리를 한다.
- 확진자와 관련된 해당 공간이 폐쇄되는 경우 폐쇄 기간 중 건물을 출입 통제한다.

2. 학생문화처 장애학생지원센터 보건실(705-8209)

- 마포구 보건소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협조를 하고, 확진자의 발생 개요(인적사항, 발생 현황), 발생 경위, 역학 조사, 검체 검사결과, 밀접접촉자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학교(총무처)와 교육부, 마포보건소에 보고한다.
- 확진자의 자가 격리, 자가 격리 후 특이 사항 등의 결과를 학교(총무처)에 보고한다.
- 밀접접촉자(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확진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교내 구성원)의 동선을 파악하여 총 무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학사지원팀(705-8126) 또는 해당 행정팀

- <u>확진자가 학생 또는 교원인 경우</u> 확진자의 수업 현황을 파악하고, 대 면수업에 참여한 경우, 교수, 학생, 조교 등 수업 관련자들에게 즉시 문자, 이메일로 통보하여 코로나 검사를 안내한다.
- 대면수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업은 일주일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해당 강의 수강자 전원 코로나 검사(신속항원검사 포함)를 권고하고 첫째,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코로나 검사(신속항원검사 포함) 결과 음성이면 결과통지 후 바로 대면수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둘째,백신 미접종자 또는 미완료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확진 발생한 수업 후 3일 동안 유고결석처리(비대면으로 수강 가능한 수업은 비대면으로 출석)하며 다시 코로나 검사(신속항원검사 포함)를 받은 후 음성판정을 받으면 대면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발전홍보팀(705-8117)

- 확진자로 인한 공간 폐쇄 명령, 주의 사항 등을 홈페이지 및 각종 교내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통해 공지하고, 관련 교내·외 기사를 관리한다.

5. 관리처 시설팀(705-8024), 안전관리센터

- 확진자와 관련된 해당 공간과 공용공간을 철저히 방역하고, 해당 공

간 또는 건물이 폐쇄되면 안전 라인 설치와 공지문 등을 부착하여 해당 건물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6. 학생생활상담연구소(705-8211)

- 확진자, 밀접접촉자 등 코로나 19 관련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심리상담 등을 진행한다.

7. 확진자가 발생한 부서(학교, 법인 등 교내 전 부서)

-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동선 등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는 즉 시 보건실에 보고한다.
- 학생은 학사관리(유고 결석 처리 등), 교직원은 근태관리 및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

8. 기숙사(곤자가국제학사, 벨라르미노학사)

- 기숙사생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를 위한 별도의 장소에 이 동하기 전까지 다른 기숙사생과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기숙사 내 별도 공간을 배정하고 관리하며, 접촉 가능성이 있는 기숙사생에게 코로나 검사(신속항원검사 포함)를 권고 한다.

9. 긴급대응팀 운영

- 기존에 운영해온 실무대책반의 대응을 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단장은 인사총무팀장 또는 안전관리센터팀장을 팀장으로 하는 긴급대 응팀을 구성하여 부서 업무를 불문하고 코로나 대응에 전력할 수 있 도록 조치할 수 있다.
- 긴급대응팀은 7~8명으로 구성하여, 교내상황에 대한 긴급공지, 방역, 통제, 교내의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서강 일상회복 지원단에 보고한다.

Ⅳ. 공간 폐쇄 기준 및 출입절차

확진자로 인해 공간이 폐쇄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운영한다.

-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강 일상회복 지원단에서는 확진자의 동선과 체류시간 등을 고려하여 방역 범위 및 폐쇄 공간의 범위(<u>폐쇄 여부</u>, 해당 호실 또는 층, 건물전체 등)를 결정한다.
- 단,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총 3일 이내에서 해당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폐쇄 대상 공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 및 동선, 그리고 이들에 의한 확산 위험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경우
 - ② 정부 지침 또는 관할 지역 보건소 등의 지시가 있는 경우
 - ③ 기타 반드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폐쇄 기간 연장 시 폐쇄공간 범위는 해당 건물 내에서 상기 경우 별 필 요성에 부합하는 최소의 범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외적으로 폐쇄된 건물을 출입하고자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장의 결재(이메일을 통한 승인 포함)를 받은 후 캡스 상황실에 제출한다. 캡스상황실은 승인서 접수(이메일 승인도 포함)후 출입문을 개방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별로 수합하여 인사총무팀에 보고한다.
- 폐쇄된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는 KF-94급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 시 착용하고, 손소독을 완료하는 등 개인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확진자가 발생한 그 장소(해당 호실)에 2시간 이상 머무르는 경우 캡스 로부터 방역복을 지급 받아 착용한다.
-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확산되는 경우 서강 일상회복 지원단에서는 상황에 따라 건물폐쇄, 학교 출입통제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 1. 폐쇄 건물 출입허가 신청서

2. 코로나19 발생 상황 보고(양식)

〈 폐쇄 건물 출입허가 신청서 〉

신 청 자: 전공(부서): 학번(사번): 신청 일자: 신청 기간:				
[출입 신청 사유]	l			
[출입 신청자 명]	단]			
[출입 신청자 명'	단]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고
		성 명	연 락 처	비고
		성 명	연 락 처	비고
		성 명	연 락 처	비고
		성 명	연 락 처	비고
* 신청 인원이 많	직 위 을 경우 명단 별	도 첨부	연 락 처 (이메일 : djyoon1@g	gmail.com)

서강 일상회복 지원단장 귀중

코로나19 발생 상황 보고

※ 예시 및 작성방법은 삭제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생 개요

○ 학생 인적사항

구분	유형	소속	학적 상태	성명	성별	생년	국적	입국일	
확진자 1									
확진자 2									
아래 예시는 삭제 후 제출									
확진자 3	학부생	사학	재학	김길동	여	99	한국	-	
확진자 4	대학원생	전자공학	재학	이수미	0‡	96	한국	-	
확진자 5	직원	교무팀	재직	박철수	남	85	한국	-	
확진자 3	유학생	한국어 교육원	재학	Peter Smith	여	86	미국	2018.10.21	
확진자 4	유학생	경영전문 대학원	재학	HING LAN	여	96	중국	2021.03.18	

[작성방법] 유학생은 국적, 영어 전체성명, 입국일 등 필수기재

- **발생현황** : O명 (2022.O.O, OO시 기준)
- 확진자 1
 - · 확진자 상황 : 서울 '강남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후 확진
 - · 학교 출입여부 : 21.01.28일까지 출입

[작성방법] '있음'이나 '없음'이 아닌 출입 시기 기재

• 학교 내 동선

[작성방법] 동선파악 범위

- 1. 확진자 접촉을 인지한 경우 접촉일 이후.
- 2 확진자 접촉 경위를 모르는 경우 확진된 날 3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경우 증상 발현 3일 전부터

1월 28일 12시 20분~12시 40분: 곤자가플라자 GS25

12시 40분~16시 20분: 아담샬관 (AS관) 1009호, 1012호

· 밀접 접촉자 현황: 2명(음성)

□ 발생 경위

- 확진자 1

○ 감염 경로 : 감염경로는 알 수 없으며 1월 30일부터 몸살, 감기 증상 발생함 [작성방법] 감염경로를 아는 경우 세부적으로 기재, 특히 교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경우 그 내용과 접촉 대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진단 검사 : 1월 30일 13시 서울 '강남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실시

○ 양성 판정 : 1월 31일 7시 '양성' 확진

○ 인지 시점 : 2월 3일 10시 '학생과의 연락'통해 학교 측 인지 [작성방법] 학생과의 연락, 모니터링, 보건소를 통해 학교 측 인지

□ 연쇄 감염의 경우 세부내용 작성

구분	항목	세부 내용
00학부	① 세부 발생 현황	(예시) - 태권도부 전지훈련(1.9.~1.11.(0일간)/세종지역/00명)을 다녀온 후 00명 집단 감염 발생 - 동일 기숙사(4인 1실)를 사용하는 학생 간 집단 감염 발생 - 어학연수 과정(1.10.~2.10.(0일간)/000명/1반 20명)을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교직원 간 집단 감염 발생 - 동일 연구소를 사용한 교직원 간 집단 감염 발생
(총 00명)	② 관련자 검사 현황	(예시) - 총 185명(기숙사 50명, 대면수업 125명, 교수 10명) 검사 실시 (00.00.~00.00.) - 운동부 전지훈련 00명 전수 검사 실시(00.00.~00.00.)
	③ 조치 현황	(예시) - 기숙사 및 강의실 폐쇄 및 방역 실시 - 전면 비대면 수업 전환(5.11.~5.18. 1주간)

보안업무 규정

제정 2007.10.24 개정 2010.2.25 개정 2013.12.4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서강대학교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5, 2013.12.4.>
-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강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의 각 부서에 적용한다.
- 제 3 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본교의 보안담당관은 총무처장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는 정보 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13.12.4>
 - ② 본교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과 능률을 위하여 각 부서에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분임보안담당관은 팀장 또는 선임직원으로 한다.
 -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정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6조에 정한 사항
 - 2.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3.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 4.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④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정보보안대책의 수립
 - 2.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 3. 정보분야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4. 정보보안업무 지도 감독 및 교육
 - 5.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
 - 6.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내에서 상기 제3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⑥ 보안담당관의 유고시에는 인사총무팀장이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2.25>
- 제 4 조 (보안심사위원회) ① 본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보안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4. 보안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5. 연간보안업무 지침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 6. 각 부서장이 제청한 사항
- 7.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 8.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정보통신원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개정 2010.2.25, 2013.12.4>
-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이 된다.<개정 2010.2.25>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 2 장 인원보안

제 1 절 신원조사

- 제 5 조 (신원조사) 신원조사는 임용전 또는 인가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 제 6 조 (신원조사의 대상)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원, 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제 7 조 (신원조사의 요청) 신원조사의 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부서에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위한 신원조사의 요청은 인사총무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0.2.25>
 - 1. 교원: 교무팀
 - 2. 직원: 인사총무팀 <개정 2010.2.25>
- 제 8조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퇴직자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절 비밀취급의 인가

제 9 조 (비밀취급인가) 본교의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무는 인사총무팀에서 주관하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2.25, 2013.12.4.>

제 3 장 문서보안

제 1 절 비밀의 취급

- 제 10조 (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부 규정, 규칙, 세칙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1조 (비밀취급의 한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라 할지라도 인가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및 업무상 관계가 없는 비밀의 취급은 할 수 없다.

제 2 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 1 2 조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는 정부 규정, 규칙,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절 비밀의 수발

- 제 13조 (수발부서 지정) 본교 비밀문서의 수발사무는 인사총무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0.2.25>
- 제14조 (수발담당자의 지정) 본교의 비밀문서 수발을 위하여 인사총무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수발을 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0.2.25>

제 4 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 제 15조 (비밀보관부서의 지정) 본교의 비밀문서는 인사총무팀에서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2.25>
- 제 16조 (비밀보관 책임자) ① 비밀보관 책임자는 정·부의 보관 책임자를 두며 정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부 책임자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2010.2.25, 2013.12.4>
 -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비밀의 도난, 누설분산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하여야 하며 비밀의 최선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 대출부, 영수증철 및 음어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 유지와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 17조 (비밀의 인계인수)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비 밀 인 계 인 수 급비밀 건

위와 같이 정히 인계인수함.

20 년 월 일

인계자직성명②인수자직성명②확인자보안담당관성명②

- 제18조 (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보관 부서에서는 비밀의 일체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음어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음어자재기록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 (비밀관리번호 부여방법) ① 비밀관리번호는 비밀의 등급에 따라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비밀의 관리번호는 동일문서 또는 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개(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작성)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수신처)에 의하여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접수한 비밀을 응신하거나 이첩 기안하여 생산한 비밀에 대하여는 접수한 비밀이나 생산(응신 또는 이첩기안)한 비밀에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 보관용 비밀에도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교내에서 생산한 비밀은 보안담당관 검토 후 총장이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관리번호의 표시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으로 표시한다.
 - ⑥ 비밀을 발송하기 위한 단순한 시행문(시행문이 비밀이 아닐 경우)은 접수 즉시 첨부물(비밀)의 표지에 문서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등을 기입하고 파기 또는 재분류자의 확인을 날인후 비밀문서로 재분류 또는 파기할 수 있다.
- 제 20조 (비밀의 지출) ① 정부 보안업무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지출을 원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비밀지출 승인서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지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지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비밀을 지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 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 ④ 비밀의 발간 또는 복제, 복사를 위하여 지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에 의한 보안담 당관의 사전 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 21조 (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한 입회자의 참여 아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설보안

제 22조 (시설보안의 담당) 본교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총무처장이 담당하며, 인사총무팀장은 총무처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2.25., 2013.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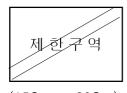
제 23조 (보호구역지정) 본교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 제한지역
 교내 소속기관 전역
- 2. 제한구역

총장실, 부총장실, 각 부서장실, 학적부보관소, 교환실, 변전실, 양수실, 보일러실, 도서관 귀 중본 서고, 정보통신원, 박물관 유물보관실, 방송국 방송실, 무인경비시스템 상황실

- 통제구역 정보통신원(주전산기 설치구역)
- 제 24조 (보호구역의 관리) ①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실, 부총장실 및 각 부서장실은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15Cm \times 30Cm)$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제2항의 표시 외에도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예시)

【제한구역】

【통제구역】

관계직원 외 출입을 금함

비인가자는 출입을 금함

(10Cm×30Cm)

④ 보호구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0 0	,	구	역	관	리	책	임	자	
정									
부									

 $(3cm \times 9cm)$

제 25조 (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제24조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1. 제한지역 : 소속기관 분임담당관
- 2. 제한구역
 - 1) 총장실, 부총장실 비서실장
 - 2) 각 부서장실, 학적부보관소, 교환실, 변전실, 양수실, 보일러실, 도서관 귀중본 서고, 정보통신원, 박물관 유물보관실, 방송국 방송실, 무인경비시스템 상황실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 3. 통제구역

정보통신원(주전산기 설치구역) -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 26조 (시설방호) ① 총무처장은 본교 시설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2.4>
 - ②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공휴일 또는 일과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 27조 (소방관리) 방화관리자는 방화 또는 소화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소방계획에 의하여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 28조 (보안사고) ① 보안사고의 범위는 비밀의 누설, 분실 및 비밀보관용기(보관시설)의 파기와 시설내 불

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기를 말한다.

-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절차를 거쳐 보고하여 야 한다.
- 제 29조 (보안사고의 보고절차)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분임보안담당관 → 소속부서장 → 보안담당관 → 부총장 → 총장 → 관계기관
- 제 30조 (보안감사)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 중 보안감사가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팀장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통신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 제 31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개정 2010.2.25> ① 보안담당관은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매월 1회씩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보안진단실시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
 - ③ 제2항의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이 공휴일이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에 실시한다.<개정 2010.2.25>
- 제 32조 (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기 타

제 33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는 바 이외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정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 규칙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적용한다.<개정 2013.12.4>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 성희롱 . 2차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2.8.27. 개정 2007.6.21. 개정 2010.6.25. 개정 2015.1.30. 개정 2017.7.18. 개정 2020.2.27. 개정 2021.7. 9.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강대학교 구성원이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 ② "성희롱"이라 함은 성폭력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2차 피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④ "피해자"라 함은 성폭력·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⑤ "가해자"라 함은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로 의결된 사람을 말한다.
 - ⑥ "신고인"이라 함은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⑦ "피신고인"이라 함은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 행위가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 ⑧ "사건관련인"이라 함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대 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원(비전임교원, 연구원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 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 를 포함한다.
- 제 4조 [예방교육] ① 총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② 본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교원, 연구원 포함) 및 직원(임시직 포함)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③ 본교 학칙적용을 받는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은 성폭력,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④ 교육대상에 따라 교무처, 총무처, 학생관할 행정부서 등은 교내 성평등센터와 협력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 ⑤ 교내 성평등센터는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그 결과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
- 제 5 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 ③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관련인의 동의 없이 사건관련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평등센터

- 제 6조 [설치] 총장은 교내에 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 7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센터에는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상담교수를 두어야 하며 그 자격과 기준은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 구성은 센터장, 상담교수, 여성문화자문교수, 학생문화처장, 여성학 연계주임교수를 당연직으로 정한다. 이외 남성교수 2인을 위원으로 정한다. 이때 남성교수는 당연직의 임원들과 구성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과, 전공을 고려해 정한다.
-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⑥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 포함) 피해의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 2. 신고 이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건해결을 위한 중재
- 3.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 4.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 포함) 피해자 치유상담 및 가해자(사건관련인 포함) 재교육
- 5.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 제 9조 [설치] 총장은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의 예방과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성 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제10조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교목처장, 센터장, 여성문화자문교수, 피해자 관련된 주무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피해자가 교수일 경우 교수 2인, 피해자가 직원일 경우 직원 2인,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 2인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전체위원들 중 과반수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대책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대책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 [업무] 대책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 사건의 조사 및 중재
 - 2.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

- 제13조 [신고 등] ① 신고는 피해자 및 제3자도 가능하며, 제3자도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② 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센터에 이첩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 ④ 센터장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심의·의결] 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대책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중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성희롱·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제15조 [징계 및 조치] ① 대책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징계권자는 대책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1. 피해자 보호 조치
 - 2. 가해자의 사과

- 3.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 4.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2차 피해를 입힐 경우 가중 징계요구
- 5. 기타 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

제16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된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